

# 有效競爭論의 研究\*

丁 炳 杰

<目 次>

I. 序 論	2. 兩基準의 性格
II. 有效競爭論의 背景	IV. 有效競爭論의 展開
1. 有效競爭論의 形成	1. 展開의 方向
2. 完全競爭모델의 問題點	2. 兩基準의 綜合
III. 有效競爭論의 內容	1) E.S. Mason의 立場
1. 有效競爭論의 構成	2) 司法長官委員會의 報告書
1) 有效競爭論의 概要	3. 產業組織論의 發展
2) 先驅者들의 主張	1) 產業組織論의 形成
3) 構造基準論	2) 產業組織論의 大要
4) 成果基準論	V. 結 論

*“The clue to the Invisible Hand paradox is this: Adam Smith would have to rely on strictly defined ‘perfect competition’ to get his result. As soon as we have imperfect competition in the real world, we have left the Garden of Eden and there arises the problem of how to minimize the evil and wastes involved in such imperfections of competition.”*

—Samuelson, *Economics*, 7th ed., 1967, p. 480 에서—

## I. 序 論

周知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混合經濟에 있어서는 民間企業이 커다란 役割을 하고 있기 때문에, 市場이 經濟活動을 規制하는 中心的인 機構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市場機能의 메리트는 여러 經濟主體들의 競爭을 통하여 가져와진다. 여기서 競爭이란 어떠한 經濟主體도 價格支配力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즉 生産物이나 要素의 價格이 市場에 있어서의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決定되며, 各經濟主體는 價格受容者(price-taker)로서 이 價格

\* 本論文은 筆者가 1967年 9月부터 1968年 12月까지 約 1年 4個月間 日本 大阪大學 社會經濟研究所에서 行한 研究의 結果이다. 이 研究를 위하여 財政의 後援을 하여준 하아바드-燕京學會(Harvard-Yenching Institute)에 대하여, 그리고 財政의 補助뿐만 아니라, 研究施設 및 資料를 利用하는 便宜를 提供해준 大阪大學 社會經濟研究所에 대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한다.

을 被動的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자기의 供給量 乃至 購買量을 調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市場에 이와 같은 競爭原理가 作用하고 있으면, 價格의 配라미터機能으로 資源의 最適配分(optimum allocation of resources)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厚生經濟理論에서 導出된 중요한 結論이다. 즉 이 結論을 假說的인 理想狀態에 관하여 證明한 것이 “모든 競爭均衡은 파레토最適이고, 모든 파레토最適은 競爭均衡이다(Every competitive equilibrium is a Pareto-optimum; and every Pareto-optimum is a competitive equilibrium)”라고 하는 命題로 要約된 厚生經濟學의 基本定理(the basic theorem of welfare economics)<sup>(1)</sup>인 것이다.

厚生經濟學의 基本定理는 理想氣體에 관한 自然法則이 眞理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지는 非現實的인 靜態的 假定 때문에 資源의 最適配分の 原理에 관한 眞理로서 否定될 수는 없다. 그러나 現實的인 公共政策의 目標로서 이것을 追求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問題가 發生한다. 왜냐하면 現實的으로 經濟의 커다란 部分은 規模의 經濟性, 技術進步 및 그 밖의 原因때문에 完全競爭이기보다는 寡占의 狀態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生産의 集中에 의한 寡占의 成立으로 現實的으로 完全競爭이 實現不可能한 狀態下에서는 競爭原理를 維持하여 資源의 最適配分을 達成하는 한편, 技術과 經營의 不斷한 革新을 促進시키는 일이 하나의 중요한 經濟政策의 課題로 되며, 오늘날의 獨占禁止政策은 이러한 課題를 對象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獨占禁止政策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政策基準을 마련하는 것은 容易한 問題는 아니다. 獨占禁止政策의 母國인 美國의 過去 80년에 가까운 經驗에 있어서, 특히 條理의 原則(rule of reason)과 當然違法(illegal per se)과의 對立이 계속된 事實은 이러한 困難性을 端的으로 表示하는 것이다. 本稿에서 다루는 有效競爭論은, 美國에 있어서의 反트러스트政策<sup>(2)</sup>의 이와 같은 歷史를 背景으로 하여, 現實的인 獨占禁止政策의 基準을 提供하기 위하여 展開된 것이다. 이제까지 有效競爭論은 現實의 市場과 産業을 分析하고, 競爭維持를 위한 政策基準을 確立하기 위하여 수많은 學者 및 實務家에 의하여 論議되어 왔으나, 아직도 有效競爭의 概念이 完全히 確立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sup>(3)</sup>, 그러한 諸論著에 관한 體系의인 研究도 충분히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實情에 있다. 그러므로 이 論文에서 筆者

(1) R. Dorfman, P.A. Samuelson, and M. Solow, *Linear Programming and Economic Analysis*, 1958, pp. 9~10.

(2) 反트러스트政策(antitrust policy)이라는 用語는 慣例的으로 美國의 獨占禁止政策을 가리킨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獨占禁止政策과 같은 意味로 보아서 無妨하다.

(3) 有效競爭論者인 G. J. Stigler는 有效競爭의 産業이라는 概念도 마치 有效한 妻나 有效한 大學처럼, 그러한 産業이 가지는 問題를 研究하는데 도움을 준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G. J. Stigler,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s Committee on Antitrust Policy—Discu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May 1956, p. 505.

는, 有效競爭論은 어떠한 背景을 가지고 있는가 (I), 그 內容은 어떤 것인가(II),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는가 (III)를 論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有效競爭論에 대한 綜合的 把握을 試圖해 보려고 한다. 有效競爭論은 主로 美國의 市場經濟와 그것에 대한 公共政策을 中心으로 하여 形成된 것이 事實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관한 研究는 市場經濟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經濟의 成果를 達成하려고 하는 現代의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도, 公共政策을 遂行하는데 重要的 意義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韓國의 경우에도 例外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市場經濟制度下에 있어서는 獨占을 規制하고 競爭을 促進하는 것이 經濟의 成果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的 政策課題의 하나로 되기 때문이다.

## II. 有效競爭論의 背景

### 1. 有效競爭論의 形成

有效競爭論이 明示的으로 論하여진 것은 J. M. Clark의 古典的 論文 “Toward a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sup>(4)</sup>에서 비롯하였다. 그리고 S. H. Sosnick가 指摘한 것처럼<sup>(5)</sup> 그 뒤로 수많은 學者의 注目을 받고 活潑한 論議가 展開되었다. E. S. Mason이나 J. W. Markham에 의하면<sup>(6)</sup> J. M. Clark가 처음으로 workable competition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였고, 지금은 effective competition도 같은 意味로 자주 쓰여지고 있다.

이 理論의 主張者들은 workable이라는 낱말을 使用하는 것에 의하여 그 概念이 現實的으로 實現可能하다는 메리트를 가지는 것임을 強調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한편으로는 Galbraith가 달하는 偉大한 通念(conventional wisdom)<sup>(7)</sup>으로서의 完全競爭보다는 劣等한 것이라는 觀念을 가지고 있었다. J. M. Clark는 後年 그의 著書 *Competition as a Dynamic Process*, 1961에서 workable competition을 버리고 effective competition을 採擇하게 된 理由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文章은 有效競爭에 관한 以上の 趣意를 明確하게 傳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40.

(5) Sosnick는 有效競爭의 基準을 提案한 學者로서 18名을 들고 있다. S.H. Sosnick, “A Critique of Concepts of Workable Competi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 1958, pp. 380, 386~391.

(6) E.S. Mason,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e Monopoly Problem*, 1957, p. 353, footnote. J. W. Markham, “Workable Competition and Operable Antitrust,” J. W. Markham ed., *The American Economy*, 1963, p. 79.

(7) J. K. Galbraith, *The Affluent Society*, 1958, Chap. 2.

“本書는 *American Economic Review* 1940年 6月號에 실린 著者の 論文 ‘Toward a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에서 시작되는 一連의 研究를 精密化한 것이다. 그 論文은 Chamberlin-Robinson의 理論에서 나오는 否定的 結論——競爭이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貢獻의 見地에서 볼 때에, 産業과 去來에 있어서의 모든 實現可能한 競爭은 獨占이 缺陷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缺陷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의 離脫을 企圖한 것이었다. 이 研究에서는 나는 workable 한 競爭보다도 effective 한 競爭……을 強調하게 되었다. 그 理由는 workable 이라는 낱말은 實現可能性을 強調할 뿐이고, 實現可能한 競爭이란 亦是……이제까지 널리 規範的인 理念으로 받아들여온 完全競爭의 劣等한 代替物이라는 判斷과 符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들이 遭遇하는 競爭은 여러가지 重要的 缺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進歩를 가져온다는 理由로 完全競爭의 規範보다도 優越한 것임을 크게 印象받게 되었다. 完全競爭으로부터의 어느 程度의 離脫은 進歩와 密接한 關係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하여 必要하기도 한 것이다. 有效競爭의 理論은 動態的 理論이다.”<sup>(8)</sup>

그러나 有效競爭의 概念上的 淵源은 反트러스트政策의 歷史와 經濟學說史的으로 볼 때에는 J. M. Clark 以前으로 溯及된다. 周知하는 것처럼 1890年에 成立한 Sherman 法은 獨占과 去來制限을 禁止하는 經濟的 自由의 大憲章(magna carta of economic freedom)<sup>(9)</sup>이었다. 그리고 그 當初의 精神은 1880年代에 美國에서 急速히 增大한 經濟力의 集中을 禁止하는 手段으로서, 좋은 트러스트(good trusts)를 無罪放免하고, 나쁜 트러스트(bad trusts)를 有罪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트러스트(all trusts)를 禁止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事實은 Learned Hand 判事에 의하여도 指摘<sup>(10)</sup>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産業을 極端적으로 細分化하여 大規模 市場支配力을 一掃하려는 嚴格性으로 보아 同法의 當初의 反트러스트 精神은 大體로 完全競爭의 概念으로 通하는 것이었다<sup>(11)</sup>. 그리고 이러한 當時의 反트러스트 思想은 政治的으로는 제퍼슨(Jeffersonian) 民主主義에 立脚한 機會均等主義를 反映한 것이었다.

그러나 American Tobacco Case(1911)와 Standard Oil Case(1911)를 契機로 하여, Sherman

(8) J.M. Clark, *Competition as a Dynamic Process*, 1961, p. ix.

(9) Walter Adams, “Public Policy in a Free Enterprise Economy,” Walter Adams ed., *The Structure of American Industry*, 3rd ed., 1961, p. 533.

(10) U.S. v. Aluminum Company of America, 148 F. 2d 416, 1945, reprinted in I.M. Stelzer ed., *Selected Antitrust Cases*, 1966, p. 22.

(11) 그것은, 當時의 反壟斷勢力의 沒理論的, 感情的, 이데올로기의 主張이었음도 否認할 수는 없다.

法 第 2 條<sup>(12)</sup>의 解釋에 條理의 原則이 導入되자 이러한 Sherman 法 當初의 精神은 크게 改變되었다. 왜냐하면 條理의 原則의 主張은 Sherman 法이 모든 去來制限을 禁止한 것이 아니라, 다만 不當한(unreasonable) 去來制限만을 違法으로 한 데 不過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正確하게 말하면, 條理의 原則에 의하면 不當하게 劣惡한 經濟的 結果를 가져오는 경우에 限해서만 法廷은 去來制限을 反트러스트法違反으로 判決하게 된다<sup>(13)</sup>. 條理의 原則의 反對는 어떤 事件에 대하여도 機械的으로 適用할 수 있는 比較的 簡單한 基準을 適用하려는 當然違法的 接近이다. 條理의 原則의 導入은, 어떤 去來制限이 正當하고, 또한 어떤 去來制限이 不當한가를 반드시 明確하게 밝힐 수는 없으므로, 反트러스트 政策의 施行에 커다란 障害로 되었던 것은 否認할 수 없다<sup>(14)</sup>. 그러나 反面에 判決上の 公正성과 合理的 結果가 이것에 의하여 促進되었다는 것도 事實이었다.

有效競爭論은 이러한 法廷의 條理의 原則에 對應해서 만들어진 經濟學的 概念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McDonald 나 Kahn 에 의하여 指摘된 바 있다<sup>(15)</sup>. 完全競爭은 다만 通念에 不過하기 때문에 現實的인 反트러스트政策의 基準으로서는 不適當한 것이고, 또한 企業이 어느 程度로 大規模로 되는것은, 規模의 經濟性을 享受하려면 不可避하다는 認識의 結果로 反트러스트政策의 施行에서는 條理의 原則이 適用되게 되고, 이러한 事實을 反映하여 經濟學的 面에서 有效競爭論이 擡頭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以上은 有效競爭論의 淵源을 美國의 反트러스트政策의 施行을 背景으로 하여 考察한 것이지만, 經濟學說史的으로 본 有效競爭의 思考의 萌芽는 멀리 Alfred Marshall 과 J. B. Clark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S. Peterson 은 “有效競爭이라는 말로 代表되는 傾向은 J. B. Clark 나 Alfred Marshall 과 같은 經濟學者의 50 年前의 思考의 自然的 發展이라고 말해서

(12) Sherman 法 第 2 條는 아래와 같다.

Every person who shall monopolize, or attempt to monopolize, or combine or conspire with any other person or persons, to monopolize any part of the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shall be deemed guilty of a misdemeanor, and, on conviction thereof, shall be punished by fine not exceeding five thousand dollars, or by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or by both said punishments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13) 反트러스트政策의 歷史에서 條理의 原則이 한 役割을 考察한 代表的 著述로는, G.W. Stocking, *Workable Competition and Antitrust Policy*, 1961, pp. 119~84 이 있다.

(14) 條理의 原則을 適用했기 때문에 強力한 反트러스트의 措置가 取해지지 못한 有名な 事件은 1920 年の U.S. Steel Case 이다.

(15) John McDonald, “The Sherman Act and ‘Workable’ Competition,” *Fortune*, Jan. 1950, reprinted in P.A. Samuelson, R.L. Bishop, J.R. Coleman ed., *Readings in Economics*, 2nd ed., 1955, p.243. Alfred E. Kahn, “Standards for Antitrust Policy,” *Harvard Law Review*, Vol. LXVII, 1953, reprinted in R.B. Heflebower and G.W. Stocking ed., *Reading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1958, p. 363.

틀림이 없을 것이다”(16)라고指摘하고 있다. 또 Markham도 “J. M. Clark自身の 有效競爭의 解釋은, 長期와 短期, 靜態的 要因과 動態的 要因 및 公式的 價格理論과 非公式的 價格理論과의 區別을 強調하는 것에 의하여, 嚴密한 Neo-Pigouvian welfare model보다도 Marshall의 現實的인 氣風에 보다 親近性을 가지고 있다”(17)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J. M. Clark自身은 前掲의 論文(18)에서 完全競爭과 獨占的競爭의 理論을 批判的으로 考察하면서 現實的 政策의 適切한 目標로서 有效競爭論을 展開하고 있으므로, J. Robinson이나 E.H. Chamberlin의 不完全競爭 및 獨占的競爭論도 有效競爭論의 形成에 커다란 影響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有效競爭의 思考는 經濟學說史上 J. B. Clark나 Alfred Marshall에서 그 萌芽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有效競爭論이 1930年代에 擡頭하였다고 보는 S. H. Sosnick의 意見이(19) 妥當性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完全競爭이 現實의 市場을 規範的으로 評價하는 基礎로서 不充分하다는 것과 둘째로 有效競爭의 基準을 明示的으로 形成하는 것의 必要性을 一般的으로 認識하게 된 것이 1930年以後이기 때문이다. 勿論 有效競爭論이 Chamberlin이 그의 著書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에서 그 基本的 觀點의 大部分을 提示한 1933年에 시작된다든가, 또는 J. M. Clark가 그의 論文 “Toward a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에서 그것을 精密化하고 命名한 1940年에 시작된다고 斷定하는 것은 誤解를 일으킬런지도 모른다. 同時代의 獨占問題에 대한 規範的 分析은 그 以前의 學者의 見解로부터 斷絶될 수가 없음은 위에서指摘된 바와 같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程度의 問題가 重要한 것임을 생각할 때, 上述한 두가지 基本的인 點이 一般的으로 強調되었다는 理由로, 有效競爭論은 1930年代에 새로이 擡頭된 經濟學의 一分野라고 보는 것이 妥當함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 2. 完全競爭모델의 問題點

前節에서 有效競爭論이 形成되는 背景을 考察한 우리는 여기에서는 完全競爭모델의 問題點에 焦點을 맞추면서, 그것이 政策基準으로서 不適當하기 때문에 有效競爭論으로 代置

(16) Shorey Peterson, “Antitrust and the Classic Model,”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57, p. 63, reprinted in R.B. Heflebower and G.W. Stocking ed., *Reading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1958, p. 319.

(17) J.W. Markham, “Workable Competition and Operable Antitrust”, J. W. Markham ed., *The American Economy*, 1963, p. 19.

(18) J.M. Clark, “Toward a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40, pp. 243~49.

(19) S.H. Sosnick, *op. cit.*, p. 380.

되게 되는 原因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問題로 되는 것은 完全競爭의 概念은 分析的 概念<sup>(20)</sup>이며, 現實的 政策에 適用하기에는 그 前提가 너무나 非現實的이라는 것이다. 周知하는 것처럼 完全競爭은 理論모델로서 市場要因間의 相互關係를 嚴密하게 追求하는 手段을 提供할 뿐만 아니라, 價格—費用의 長期均衡에 必要한 理論的 條件을 嚴格하게 定義해 주는 것이다. 歷史적으로 보면 完全競爭의 概念은 처음에는 競爭的 市場壓力으로 생기는 費用—價格關係에 관한 一連의 結論으로서 展開되었지만, 競爭에 基因하는 費用—價格關係가 理論적으로 보다 嚴密하게 定義됨에 따라서, 거꾸로 그것은 이러한 結果에 必要한 前提條件으로서 理論적으로 定式化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完全競爭은 現實的 敘述로부터 分析 혹은 思考의 用具로서 假說의 性格을 가지게 되었다.

完全競爭모델의 前提가 非現實的인 것임은, 이를테면 A. W. Stonier 와 D. C. Hague 가 ① 購賣者와 販賣者의 多數, ② 同質의 生産物 및 ③ 自由參加를 條件으로 들고 있는 것이 라든가<sup>(21)</sup>, 또는 司法長官委員會의 報告書가 ① 그 市場의 모든 競爭的 販賣者의 生産物은 完全한 代替物이고, 모든 購買者와 販賣者는 市場에 대하여 完全한 知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顧客과 供給源에 대하여 完全히 無差別일 것, ② 販賣者가 多數이어서 어떤 販賣者의 生産量도 無視할 수 있을 정도의 市場供給量에 不過할 것, ③ 現存企業과 같은 費用으로 새로운 企業이 그 產業에 進入할 수 있을 것, 그리고 ④ 모든 販賣者와 購買者는 完全可動性을 가질 것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sup>(22)</sup> 容易하게 看取할 수 있다. 以上の 모델에 따르면, 完全競爭의 狀態에서는 實際로 無數한 原子的 購買者와 販賣者가, 完全한 知識과 費用이 들지 않는 接近 및 可動性을 가지는 連續的 市場에서, 다른 去來者들과는 獨立的으로, 公共的인 規制를 받는 일이 없이, 각각 合理的으로 자기의 極大利潤을 追求하면서, 標準化된 生産物을 去來하는 것이 된다<sup>(23)</sup>. 이러한 狀態는 商品去來所등의 例外를 除外한다면, 現實적으로 存在하는 것은 아니므로, 完全競爭모델은 理論的 分析을 容易하게 하는 思考의 用具이지, 그것이 政策基準으로 될 수 없음이 分明하다. 그러므로 政策問題를 위해서는, 실사 理論的 嚴密性에서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別個의 政策基準이 要請되는 것이다.

(20) 競爭을 分析的 概念과 政策的 概念으로 나누어서 考察하기를 強調한 主張으로는 이를테면, D.S. Watson, *Economic Policy*, 1960, pp. 201~5가 있다.  
(21) A.W. Stonier and D.C. Hague, *A Textbook of Economic Theory*, 2nd ed., 1957, pp. 123~26(丁炳然 譯, 『新經濟原論』, 1960, pp. 131~34).  
(22)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s National Committee to Study the Antitrust Law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5, p. 337.  
(23) S.H. Sosnick, *op. cit.*, p. 383.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완전경쟁은靜態의 性格을 가졌다는 點이다. 즉 그것은 어떤 市場이 그것을 向하여 窮極의으로 움직여 가게되는 均衡狀態下의 費用—價格關係를 明確히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實際의 市場의 實情으로는 결코 이러한 均衡에 到達한다고 期待할 수는 없다<sup>(24)</sup>. 現實의 經濟에서는 新製品, 新生産方法등과 같은 技術革新이 活潑하게 행하여지고 있고, 需要構造도 不斷히 크게 變動되고 있다. 그런데 完全競爭의 모델은 이러한 動態的인 變化의 要因을 考慮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靜態의 性格을 가지는 完全競爭의 基準을 動態的인 現實經濟에 適用하기는 困難하며, 여기에 完全競爭이 拒否되지 않으면 안되는 또하나의 理由가 있다.

完全競爭의 前提의 非現實性에 관하여 특히 附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前提가 모두 極端의인 경우에 關한 것이고, 그 條件의 바람직한 程度에 關하여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點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市場의 特徵은, 이를테면 集中率, 規模, 生産物의 差別化 및 價格伸縮性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두 程度의 問題인 것이며, 擇一의인 評價를 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도 完全競爭은 現實的인 適用이 困難한 것을 알 수 있다.

獨占擁護論者인 Schumpeter 가 “……完全競爭은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劣等한 것이고, 그리고 理想的 效率의 모델로서 設定될 아무런 資格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政府의 産業規制의 理論이 大企業은 그 産業이 完全競爭에서 作用하는 경우와 같게 作用시켜야 한다는 原理에 立脚하는 것은 잘못이다”<sup>(25)</sup>라고 銳利하게 完全競爭을 攻撃한 것이나, 有效競爭論의 創始者라고 할 수 있는 J. M. Clark 가 “……完全競爭은 存在하지 않으며, 存在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마 存在한 적도 없었다”<sup>(26)</sup>라고 말한 것이나, 構造基準論者인 Stigler 가 “만일 競爭과 獨占이 完全競爭과 完全獨占을 意味한다면, 확실히 이 兩者는 存在한 일도 없고, 存在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sup>(27)</sup>라고 斷言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上述한 바와 같은 完全競爭모델의 問題點에 基因하는 主張이라고 생각된다.

以上에서 完全競爭의 基準은 現實的으로 拒否되어야 하고, 이에 代身해서 다른 政策基準의 出現이 要請되는 理由가 分明해졌다. 元來 政策基準은 規範의 性格을 가지는 것이므로 政策基準으로서의 競爭의 概念은 分析的인 競爭의 概念과 그 性格을 달리해야 한다.

(24)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s National Committee to Study the Antitrust Laws, 1955, p. 338.

(25) J.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1950, p. 106.

(26) J.M. Clark, *op. cit.*, p. 241.

(27) G.J. Stigler, "The Extent and Bases of Monopoly,"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42, No. 2, Part 2, p. 1.



이런 意味에서 完全競爭보다도 한층 現實적이고 實際적인 政策基準이 要請되게 된 것이다. 有效競爭基準은 이러한 要請에 副應하여 出現한 것이다.

### III. 有效競爭論의 內容

#### 1. 有效競爭論의 構成

##### 1) 有效競爭論의 概要

有效競爭論은 一般的으로 “現實적으로 達成 가능한 어떠한 狀態가 個別主義적인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社會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를 보이는 企圖”(28)로서 理解되며, 또한 그것은 ① 各企業은 自己責任의 原則에서 事業을 經營할 것, ② 競爭의 原理가 貫徹되어야 할 것, ③ 消費者保護가 重視되어야 할 것등을 主張하는 點에서 共通의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具體的 內容은 論者에 따라서 相異하다. 이를테면 Mason 에 의하면 “有效競爭의 定義는 有效한 經濟學者의 數와 같은 程度로 많다”(29)고 하였으며, Sosnick 에 의하면 “有效競爭의 定義는 18 名의 學者(30)에 의하여 提示되고 있는데, 그들의 定義는 時間的으로 다르거나, 分析上의 많은 微妙한 點에서 相異하다”(31)고 指摘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有效競爭論者들의 主張을 그들이 強調하는 어떤 基準에 따라서 크게 分類하는 것은 可能할 뿐만 아니라, 또한 有效競爭論의 意味內容을 理解하기 위해서도 有用하다고 생각된다. 事實 이제까지 論者들은 有效競爭論을 市場構造와 市場成果의 두가지 基準으로 나누어 考察하는 立場이나, 構造, 行動 및 成果의 세가지 基準으로 나누어 論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有效競爭을 市場의 構造, 行動 및 成果를 基準으로 하여 評價하려는 後者의 立場은 Sosnick 에 의하여 主張된 바 있는 比較的 最近의 일이다. 그는 ① 이를테면 生産物多樣化(product variety)에서 볼 수 있는것 처럼, 어떤 個別的 市場特質이 한가지 以上の 基準에 겹쳐지는 可能性이 있다는 것 및 ② 構造로부터 行動, 그리고

(28) Sosnick, *op. cit.*, p. 380.

(29) E.S. Mas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onopoly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Harvard Law Review*, June 1949, reprinted in E.S. Mason,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e Monopoly Problem*, 1957, p. 381.

(30) Sosnick 은 18 名의 學者의 이름을 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의 論文의 脚註로 推測한다면, 다음에 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M.A. Adelman, J.S. Bain, W.C. Baum, J.M. Clark, C.D. Edwards, C.E. Griffin, B.W. Lewis, J.W. Markham, E.S. Mason, R.S. Meriam, V.A. Mund, A.R. Oxenfeldt, B. Smith, G.J. Stigler, G.W. Stocking, D.H. Wallace, M. Watkins, C. Wilcox. Sosnick, *op. cit.*, pp. 389~90, footnote.

(31) Sosnick, *op. cit.*, p. 380.

行動으로부터 成果에 이르는 完全한 因果의 連鎖가 언제나 成立되는 것이 아니라 點을 認定하면서, 세가지 分類基準에 관하여, 構造(structure)는 市場의 型態(patterns), 狀態(status) 및 構成(composition)을 形成하는 特質에 관한 것이고, 行動(conduct)은 企業家の 行爲(actions), 去來(dealings) 또는 戰略(tactics)과 같은 特質에 관한 것이고, 成果는 規範的 意味를 가지는 經濟的 成果(economic results)의 實現을 나타내는 諸量(dimensions)에 관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sup>(32)</sup>. 이러한 立場은 오늘날 J. S. Bain 이나 R. Caves 를 中心으로 하는 產業組織論(industrial organization)의 展開에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으며, 科學的인 獨占禁止政策의 樹立에 寄與하게 되었음은 後述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것은 有效競爭을 分類하는 傳統的인 方法은 아니다. 이것에 대하여 보다 傳統的인 立場은 有效競爭을 市場構造基準과 市場成果基準이라는 두개의 對立되는 基準으로서 把握하려는 前者의 見解이다. 이러한 立場은 有效競爭의 基準을 反트러스트政策 施行上의 嚴格한 立場과 그렇지 않은 立場에 關聯시켜서 考察하려는 이데올로기의 視點에 서는 것이며, 그런 경우 當然히 構造基準은 嚴格한 性格을 가지고, 成果基準은 彈力的인 性格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 產業組織論의 立場에서 볼때 獨立의인 基準인 市場行動의 基準은, 두가지 基準의 立場에서는 原理적으로 構造基準과 그 이데올로기의 視點을 같이하므로 構造基準에 包含되게 된다. 이와같이 두가지 基準의 立場에서는 市場의 構造要因과 行動要因이 다같이 構造基準의 範疇에 包含되고 있는 事實은 後述의 C. Edwards 나 Mason 등의 構造基準의 定義에서 確認할 수 있다.

그러나 當然한 일이지만 이러한 基準은 처음부터 論者에 의하여 具體적으로 認識된 것은 아니었다. 아마 有效競爭基準의 二分法은 1949年의 Mason의 論文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sup>(33)</sup>. 따라서 大多數의 有效競爭論者는 스스로의 主張이 어떤 基準을 強調하는 것인가를 明白히 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럴 必要도 없었다. 그러나 有效競爭論을 構造基準과 成果基準으로 二分하는 것은, 그 內容을 考察하는데 有用할 뿐만 아니라, D. S. Watson, J. McDonald, Harvey J. Levin 등의 著述<sup>(34)</sup>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最近까지 一般적으로 採用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 方法을 따라서 有效競爭의 內容을 考察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32) Sosnick, *op. cit.*, pp. 386~7.

(33) E.S. Mas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onopoly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op. cit.*, pp. 351~70.

(34) D.S. Watson, *Economic Policy*, 1960. J. McDonald, "The Sherman Act and 'Workable' Competition", *op. cit.*, 1955. Harvey J. Levin ed., *Business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A Book of Readings*, 1958.

우리는 以上에서 有效競爭을 論하는 경우에는 構造基準과 成果基準으로 二分해서 把握하는 것이 J. S. Mason 以來로 一般的인 方法임을 보였다. 이 節에서는 이 두가지 基準의 하나하나에 관하여 그 主要한 論者들의 主張을 考察하면서 有效競爭論의 內容을 檢討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한 準備로서 構造基準論이나 成果基準論의 어느 쪽에도 屬하지 않고 中立的인 立場을 취하면서 兩基準에 관하여 가장 適切한 概念規定을 附與한 Mason 에 따라서, 먼저 有效競爭論에 대한 包括的인 理解를 깊이해두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우리는 어떤 事象을 그것을 成立시킨 條件에 의하거나, 또는 齎來된 그 結果에 의하여 判斷하게 된다. 이를테면 우리는 前節에서 完全競爭을 多數의 購買者와 販賣者, 同質的인 生産物 및 自由參加등의 條件이 갖추어진 市場의 狀態라고 定義하였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 우리는 完全競爭이 以上과 같은 市場狀態에서 齎來하는 結果, 即  $\text{價格} = \text{限界收入} = \text{限界費用} = \text{平均費用}$ 으로 定義될 수 있는 것도 通常의 價格理論에 의하여 알고 있다. 이와같이 競爭 또는 어떤 市場의 競爭의 有效性(effectiveness of competition)도 이러한 두가지 面에서의 把握이 可能하다. 그 하나는 競爭을 個別企業이 가지는 市場支配力을 極端的으로 制限하는 市場組織(market organization)의 한가지 形態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競爭을 市場에 있어서의 企業의 成果(performance)로 把握하는 것이다. 有效競爭을 構造와 成果의 두가지 基準에서 比較되는 理由도 이러한 考察方法上의 差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現實的으로 技術的 및 制度的인 條件이 完全競爭의 條件에 合致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바람직한 競爭의 成果 即 資源의 效率的인 利用을 期待할 수 있다. 그러나 技術的, 制度的인 條件이 完全競爭과 兩立하지 않는 現實에서는 “資源利用上 바람직한 成果를 가져오는 것으로 正常的으로 期待되는 市場構造에 의하여 바람직한 競爭을 定義하는 問題”<sup>(35)</sup>가 擡頭되지 않을 수 없다. 事實 反트러스트政策分野에서 公共政策의 基準을 세우기가 困難한 가장 根本的인 原因은 이러한 問題인 것이다. 有效競爭을 테스트하는 가장 適切한 方法은 무엇인가, 그것은 企業의 行動範圍를 制限하는 構造基準에 의하여 테스트할 것인가, 또는 바람직한 成果를 基準으로 할 것인가, 이 두가지 目標 사이에 矛盾은 없는가, 競爭의 市場構造의 基準은 반드시 바람직한 企業成果를 가져오도록 定義될 수 있는 것인가 등등의 諸問題는 有效競爭論에 內在되고 있는 基本的인 問題이다. 우리는 以上과 같은 問題의 所在를 認識하면서, 먼저 Mason 에 의한 有效競爭의 두가지 基準의 內容이 어떤 것

(35) Mason, *op. cit.*, p. 353.

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Mason 에 의하면 有效競爭의 構造基準에서는 購買者는 充分한 多數의 選擇의이고 獨立된 供給源에 接할 수 있고, 販賣者는 充分한 多數의 獨立된 顧客에 接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주로 必要한 것은 “① 相當히 多數의 販賣者와 購買者가 있어서, ② 그 中의 누구도 市場의 커다란 比率를 차지하는 일이 없고, ③ 雙方에 共謀가 存在하지 않으며, ④ 또한 新企業에 의한 市場進入의 可能性이 있을 것”<sup>(36)</sup>이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成果基準의 바람직한 條件으로서는 “① 製品 및 生産過程의 改善을 위한 不斷한 壓力, ② 커다란 費用減縮에 隨伴되는 價格의 下方適應, ③ 低コスト操業에 必要한 企業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效率的 規模의 生産單位로의 生産의 集中, ④ 生産高에 대한 生産能力의 效率的 適應 및 ⑤ 販賣活動에 있어서의 資源浪費의 回避”<sup>(37)</sup> 등을 들고 있다.

以上の 構造基準과 成果基準에 대한 Mason의 定義는 가장 代表的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Mason도 認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市場構造에 의한 有效競爭이 果然 上述한 基準에 따른 企業成果를 達成시키느냐, 또는 마찬가지로 重要한 일이지만, 단일 이러한 條件이 없으면 바람직한 企業成果의 基準에 到達될 수 없는가가 問題로 되고, 또 한편으로는 企業成果의 基準에 따르면 構造基準과는 關係없이 反트러스트政策의 適合性を 判定할 수 있는가도 問題로 된다. 이와같은 問題, 換言하면 兩基準 사이에는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 그중의 한 基準에 依存함으로써 有效競爭을 達成할 수 있는가, 또는 그것들을 適當히 綜合해서 考慮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의 考察은 次章(IV)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바람직한 市場構造의 諸條件을 有效競爭의 基準으로 삼는 構造基準의 立場과, 바람직한 市場成果를 有效競爭의 基準으로 삼는 成果基準의 立場을 各各 그 代表的 論者들을 中心으로 하여 綿密한 考察을 해보려고 한다.

有效競爭論의 發展을 特히 그 두가지 基準과 關聯하여 考察하는 경우, 먼저 有效競爭論에 先驅의 役割을 한 J. M. Clark와 C. Wilcox가 있고, 이에 이어서 構造基準이 Stigler에 의하여 提起된 後, C. Edwards 其他의 學者들에 의하여 精密化되는 한편으로, 이것에 대하여 構造基準을 批判하는 形式으로 成果基準이 M. A. Adelman, J. W. Markham 및 J. S. Bain 등에 의하여 展開되었다. 그러므로 本節의 論議에서 先驅者들의 主張, 構造基準論, 成果基準論의 順序를 따르는 것은 以上과 같은 有效競爭論의 發展의 方向과도 一致되는

(36), (37) Mason, *op. cit.*, pp. 353~354.

것이다.

2) 先驅者들의 主張

—J.M. Clark 와 C. Wilcox

우리는 앞에서 有效競爭(workable competition)이라는 낱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것에 公式的인 內容을 附與한<sup>(38)</sup> 先驅的 論文은 J. M. Clark 의 “Toward a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임을 보았다. 이 論文은 1939年 12月에 열린 美國의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과 Econometric Society 와의 合同圓卓會議에서 討論에 붙여지고, 다시 그 原稿를 擴充·補完해서<sup>(39)</sup> *American Economic Review*, 1940年 6月號에 發表한 것이다.

이 論文에서 그는 “나는 理念으로서의 完全競爭基準이 가지는 固有한 效用에 관하여 是非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그것은 그 理念에 가장 近似하게 作用하는 要因에 대하여 쓸모있는 指標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를 가져왔다고 느낀 일이 여러번 있었다. 이 論文은 이 問題를 다루는 것이다”<sup>(40)</sup>라고 하면서 새로운 競爭概念을 展開할 必要性을 認定한 다음, 完全한 定義는 아니라고 前提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의 競爭概念을 敘述하고 있다. “競爭은, 同一하다고 생각되는 製品을 다른 販賣者로부터 購買할 수 있는 購買者의 自由로운 選擇때문에 各販賣者가 붙일 수 있는 價格이 有效하게 制限받는 條件下에서 各販賣單位가 正常的으로 極大純收入을 追求하고,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充分한 數의 販賣者에게 각기 다른 販賣者와 同程度 또는 그것을 超過하는 魅力을 보이려는 努力을 不可避하게 하는 製品販賣上의 對立(rivalry)이다”<sup>(41)</sup>라고. 技術 其他의 要因때문에 完全競爭으로의 接近이 實質的으로 不可能한 經濟에 있어서, 活力이 있는 資本主義와 矛盾되지 않을 뿐아니라, 一般的 經濟厚生을 높이는 競爭的 行動이 어떠한 不完全市場에서 가져와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政策目標를 위하여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데, Clark 는 Bain 이 指摘<sup>(42)</sup>한 바와 같이 이러한 問題의 分析에 注目되는 端緒를 提供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C. Wilcox 는 臨時全國經濟委員會(Temporary National Economic Committee,

(38) J.W. Markham, “Workable Competition and Operable Antitrust,” J.W. Markham ed., *op. cit.*, p. 79.

(39) J.M. Clark, “Toward a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40, p. 241.

(40) J.M. Clark, *op. cit.*, p. 241.

(41) J.M. Clark, *op. cit.*, p. 243.

(42) J.S. Bain, “Workable Competition in Oligopol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0, No. 2, p. 5.

TNEC)<sup>(43)</sup>의 一員으로 일하면서 有效競爭의 概念을 展開하였다. TNEC는 31個의 公聽會記錄, 43篇의 모노그라프 및 最終報告書를 合하여 3,300페이지에 達하는 龍大한 文書를 發表한 바 있는데, 그것은 政策樹立의 基礎로서 美國의 全產業構造를 널리 實證的으로 調查한 것이었다. 그러나 世界大戰때문에 TNEC의 重要한 立法上의 提案은 實現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經濟學者, 反트러스트政策擔當者 및 法官들에게 獨占과 競爭의 問題의 보다 條理있는 理解를 위한 事實의 分析의 基礎를 提供하였다. 또한 그 研究結果는 反트러스트政策을 위한 여러가지 目標도 示唆하였다<sup>(44)</sup>.

Wilcox는 이 TNEC의 모노그라프 *Competition and Monopoly in American Industry*에서 各種의 競爭概念을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sup>(45)</sup>. 이중에서 그의 有效競爭의 定義는 첫 번째 範疇에 속한다.

1. 여러 販賣者들 사이에 購買를 移動함으로써 品質, 서비스 및 價格에 크게 影響을 하는 實質的 選擇可能性을 購買者들에게 提供하는 販賣者間의 競爭.
2. 하나나 두개의 企業이 供給量의 10분의 9나 그 以上을 支配하는 獨占과 複占<sup>(46)</sup>.
3. 少數의 企業이 全體의 供給量을 支配하고, 하나 또는 少數의 企業이 供給量의 大部分을 支配하는 寡占과 市場支配(market dominance).
4. 多數의 企業이 주로 카르텔과 事業者團體에 의하여 共通의 政策을 追求하는 것.

以上에서 1940년에 거의 때를 같이하여(Wilcox가 조금 늦었지만) 有效競爭을 提唱한 先驅者로서 Clark와 Wilcox의 定義를 보았다. 이 兩人的 定義에 共通되고 있는 特徵은 購買者(消費者) 保護的 性格만이 強調되어 있어서, 後述하는 有效競爭의 兩基準의 어느쪽에 重點을 두고 있는가가 아직 確然하지 않고, 또한 그 結果로 現實的인 反트러스트政策의 基準으로서 매우 漠然하다는 點이 指摘되어야 한다.

Clark의 定義가 曖昧함을 가장 잘 보인 것은 “Clark의 有效競爭의 概念이 나중의 構造基準論者와 마찬가지로 個別的 購買者나 販賣者의 行動範圍의 限定을 強調하고 있으나,

(43) 臨時全國經濟委員會는 Franklin D. Roosevelt 大統領 在任時인 1938年 6月 16日에 當時의 反트러스트法과 增大해가는 經濟力의 集中을 調和시키는 方法을 찾아내고, 그것에 適合한 立法措置를 勸告할 目的으로 組織되었다.

(44) M. Fainsod, L. Gordon, J.C. Paramountin, Jr., *Government and the American Economy*, 3rd ed., 1959, pp. 571~72.

(45) *Competition and Monopoly in American Industry*, TNEC Monograph 21, 1940, p. 8.

(46) Wilcox는 獨占과 複占은 그 基本的特徵과 窮極의 影響에 있어서 同一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誤解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論議에 의하면 그 限定이 不充分한 것처럼 생각된다”고 한 Mason의 主張이다<sup>(47)</sup>. 그리고 Wilcox의 定義가 不明確한 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Stigler가 TNEC의 文獻을 批判하는 形態로 指摘<sup>(48)</sup>하고 있다.

그러나 後年の 그들의 見解를 보면, Clark는 점차 成果基準으로 傾斜해 간데 대하여, Wilcox는 構造基準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 證據로는 Clark는 1955年의 論文 “Competition: Static Models and Dynamic Aspects”에서 理論과 現實 특히 費用—價格均衡理論과 生産, 成長 및 發展理論과의 靚을 메우기 위해서는 技術進步, 進步로 因한 利益의 顧客으로의 波及, 自由와 機會에 관한 競爭的 對立의 條件等 動態的 側面을 強調하고 있고<sup>(49)</sup>, 1961年의 그의 著書 *Competition as a Dynamic Process*에서는 Schumpeter의 色彩가 特히 濃厚하게 나타나고 있는 事實을 들 수 있다. 이에 反하여 Wilcox는 1960年에 改正한 그의 著書 *Public Policy toward Business*에서 競爭의 定義를 構造基準의 立場에서 詳細하게 하고 있고, H. J. Levin에 의하여 構造基準論者의 代表로 看做되고 있다<sup>(50)</sup>. 그러나 1940年 當時의 兩人的 見解는 消費者保護의 色彩를 強調할 뿐이고, 定義內容이 不充分하기 때문에, 筆者는 그들이 有效競爭의 二基準의 어느 쪽에 屬한다고 하기 보다는, 다만 有效競爭論의 先驅者로 본 것이다. 그러나 有效競爭論이 하나의 政策基準으로서 展開되려면, 보다 具體的인 基準의 確立이 要求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要求에 副應하고자 出現된 것이 構造基準論과 成果基準論인 것이다. 次節에서는 먼저 構造基準論을 Stigler와 Corwin Edwards를 中心으로 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 3) 構造基準論

Stigler의 構造基準論은 TNEC의 諸모노그래프 특히 Wilcox가 擔當한 모노그래프 21號의 曖昧한 有效競爭概念을 批判하는 데서 出發하고 있다. Stigler에 의하면 前述한 바와 같이 完全競爭은 存在한 일도 없고, 此後로도 存在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極端的 概念은 實證的 研究에 直接 利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歷史적으로 美國에서 現實의 經濟를 判斷하는 評價基準으로 認定된 競爭의 企業經濟(competitive enterprise economy)는 TNEC의 大部分의 關係者들에 의하여도 그대로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7) E.S. Mason, *op. cit.*, p. 354, footnote.

(48) G. J. Stigler, “Temporary National Economic Committee: Reviews of Monographs,”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41, pp. 573~74, 및 G.J. Stigler, “Extent and Bases of Monopoly”,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42, No. 2, Part 2.

(49) J.M. Clark, “Competition: Static Models and Dynamic Asp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5, reprinted in R.B. Heflebower and G.W. Stocking ed., *Reading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Series, 1958, p. 244, pp. 247~251.

(50) H.J. Levin ed., *Business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A Book of Readings*, 1958, p. 4.

그들은 競爭的企業經濟를 嚴密하게 定義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TNEC 특히 모노그래프의 各產業에 대한 判斷을 困難하게 만든 原因이었다.

이와 같이 TNEC의 實證的 研究은 不滿足스러운 것이었으므로, 競爭的企業制度의 基準보다도 보다 具體的인 有效競爭의 體系가 要請되게 되었고, 이러한 要請에 呼應할 目的으로 Stigler는 새로운 有效競爭의 定義를 提案하였다.

다음의 有效競爭의 定義는 主로 一般的인 獨占研究에 必要한 具體的 基準를 提供하려는 暫定的 定義로서 Stigler에 의하여 提示된 것이다. 즉 그의 定義에 의하면 어떤 產業이 ① 重要的 各市場領域에서 密接하게 關聯되는 製品을 販賣하는 企業이 相當히 多數 存在하고, ② 이러한 諸企業間에는 共謀가 存在하지 않으며, ③ 新企業의 長期平均費用曲線이 既存企業의 그것보다 顯著하게 높지 않은 경우에 그 產業은 有效競爭的이다<sup>(51)</sup>. Stigler의 特徵은 反트러스트政策의 基準으로서 完全競爭의 基準으로부터 有效競爭의 基準으로의 變換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나아가 그 有效競爭의 基準은 先驅者들의 基準처럼 曖昧하지 않고 具體的인 條件을 指摘한 일이다. 그리고 그 條件을 보면, 企業의 數(完全競爭처럼 많은 數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共謀의 不存在 및 市場進入의 問題等, 前述한 Mason의 構造基準의 네가지 條件中에서 市場占有率에 대한 條件을 除外한 세가지 條件이 列擧되어 있다. 이 點에 있어서 Stigler는 最初의 構造基準論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또하나의 代表的 構造基準論者인 Corwin Edwards의 主張을 그의 著書 *Maintaining Competition*, 1949을 中心으로 하여 考察하자. 그도 Stigler와 마찬가지로 完全競爭의 檢討로부터 論議를 시작하고 있으나, 完全競爭의 非現實性의 說明이 Stigler보다도 훨씬 明快하다. 그에 의하면 “競爭은 私慾과 公益을 調和시키는 自動裝置라는 생각은 競爭의 過程(competitive process)의 不完全性을 無視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競爭은, ① 모든 關係者는 充分한 知識을 가지고 있고 完全히 合理的이며, ② 자기들의 購買와 生産活動을 아무런 困難없이 移動시킬 수 있고, ③ 또한 그들은 相對的 費用, 效用 및 價格에 따라서 움직이고, ④ 그들은 小規模이고 多數이므로 個別的인 影響力을 가지지 않는 것을 意味하였다. 또한 실사 이러한 競爭에 대하여 障礙가 있다손치더라도, 그와같은 障礙는 競爭의 過程의 性質을 變更시킬 수는 없으며, 다만 그 作用을 遲延시킬 따름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長期的으로는 完全競爭과 同一한 成果를 가져온다고 期待되었다. 完全競

(51) G.J. Stigler, "Extent and Bases of Monopoly,"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42, No. 2, Part 2, pp. 2~3.



爭의 成果는 經濟資源의 最適配分, 極大總生産 및 모든 生産者에게 그 生産性에 따라서 報酬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런 것이 競爭에 의하여 達成하려는 이른바 ‘均衡’의 特質이었다”(52). Edwards는 從來의 競爭概念을 以上과 같이 보았다.

그러면 競爭의 産業의 實態는 이런 意味에서 完全競爭의인가? 資源의 移動에는 相當한 費用과 遲延이 따른다. 知識은 不完全하고, 動機는 混亂되고, 그때문에 意思決定은 阻害된다. 效率의 變化는 利潤의 變動으로 直接 反映되지 않으며 全體의 見地에서 濫費로 되는 販賣活動과, 購買者의 判斷을 그르치는 生産物差別化가 成功을 위한 手段으로 된다. 利潤은 生産이나 分配面 뿐 아니라, 生産過程과 關係가 없는 金融的 操作에 의하여도 追求된다. 多數企業間의 非個人的(impersonal)인 競爭 대신에, 少數企業間의 意識的인 競爭이 행하여진다. 이러한 競爭이 있는 한편으로는, 生産制限과 價格維持의 動機가 흔히 強力하게 作用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諸障礙 때문에, 生産能力이 完全히 利用되고, 價格에는 必要費用과 最小利潤만 包含되고, 報酬는 限界生産성에 比例하고, 資源은 極大總生産이 되게끔 配分되는 競爭은 自動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같은 競爭過程의 不完全性 때문에, 迅速하고 嚴密한 經濟的 調整이 困難하게 된다. 그러나 競爭의 要因은 수많은 經濟的 惡調整을 減縮시키는 傾向을 가지는 것이다. 좋지 않은 資源配分은, 人爲적으로 進入이 制限되지 않는 限, 勞動과 資本의 移動에 의하여 改善된다. 產出量이 制限되고 報酬가 높은 경우에는, 새로운 生産者들이 誘因되고, 그 結果로 生産은 增大된다. 以上이 Edwards가 競爭維持政策을 主張하는 한가지 根據이다. 그는 또한 競爭維持政策의 目標은 이와같은 넓은 意味의 競爭機能 뿐 아니라, 보다 直接的으로 企業의 協定과 獨占力을 抑制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의 競爭維持의 또한가지 根據인데, 이를 위한 競爭政策은 從前의 經濟理論에서 豫想하는 것같은 原子的競爭(atomized competition)을 반드시 追求하는 것이 아님이 指摘되고 있다. 우리는 競爭政策에 의하여 產出量制限과 一方的 市場支配力을 抑制할 뿐 아니라, 富와 權力的 過度한 集中을 막고, 機會均等を 確立하고, 産業支配力이 政治權력과 結付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目標은 歷史적으로는 經濟的均衡이나 競爭概念보다도 앞서는 것이다. 그것은 完全競爭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라, 現實의 競爭의 市場에서 行하여지고 있는 不完全競爭에 의하여 達成 가능한 것이다.

以上の 論述에 의하면 그가 追求하는 競爭概念은 完全競爭보다도 有效競爭을 意味하는

(52) Corwin D. Edwards, *Maintaining Competition*, 1949, pp. 6~7.

것임을 알 수 있다. 事實 그는 購買者와 販賣者가 어느 程度로 多數의 選擇에 接近할 수가 있고, 相對的으로 滿足스럽지 못한 것을 그중에서 拒否할 수 있는 壓力이 있으면, 이러한 競爭이 成立된다고 認定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競爭이 成立되기 위한 市場의 特質은 무엇인가? Edwards가 보인 것은 다음의 일곱가지 條件이다<sup>(53)</sup>.

1. 實質的으로 同一한 製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 어느 程度 多數의 供給源과 어느 程度 多數의 潜在的 顧客이 存在하여야 한다. 供給者와 顧客은, 各個의 去來者가 全혀 個人的 影響을 미칠 수 없을 程度로 多數일 必要는 없다. 그러나 그 數는 市場의 反對便 사람이 어떠한 特定の 去來者로부터도 손쉽게 離脫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에 代身하는 여러가지 選擇行爲를 찾을 수 있을 程度로 多數이어야 한다.

2. 어떠한 去來者도, 자기의 競爭者를 強壓(coerce)할 수 있을만큼 強力해서는 안되고, 또 적어도 그의 去來量의 相當한 部分을 다른 去來者가 받아 들일 能力이 없을 정도로 大規模이어서는 안된다.

3. 去來者들은 利潤과 損失의 誘因에 反應的이어야 한다. 즉 그들의 政策이 어떤 市場에서 나오는 通常의 商業的 誘因에 의하여 影響되지 않을 程度로, 그들이 大規模이어서는 안되고, 多角的生産(diversification)이어서는 안되고, 商業的 目的보다도 政治的 目的에 專念해서는 안되고, (國家의) 補助를 받아서는 안되고, 또한 그 市場의 結果에 無關心이어서는 안된다.

4. 企業의 政策의 問題는, 競爭者와의 協定에 의하지 않고 單獨으로, 各去來者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한다.

5. 새로운 去來者는, 다른 去來者들이 이미 그 市場에 確立되어 있다는 事實때문에 自動的으로 생긴 핸디캡을 除外하고는, 보다 不利하지 않은 條件으로 그 市場에 進入하는 機會를 가져야 한다.

6. 그 市場의 한쪽 去來者에 의한 다른 쪽 去來者로의 接近은, 距離나 利用可能한 選擇에 대한 無知등과 같은 故意的이 아닌 障礙에 의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妨害되어서는 안된다.

7. 어떠한 重要的 去來者나 그 集團에 대하여도, 法律, 政治 또는 商業上의 結托에 의하여, 그 市場內에 커다란 特惠의 地位가 주어져서는 안된다.

Edwards는 市場이 以上과 같이 組織되면, 限定的이기는 하지만, 競爭은 直接關聯되는

(53) Corwin D. Edwards, *op. cit.*, pp. 9~10.

去來者나 公共의 利益을 위한 有效한 保護手段으로 된다고 말한다. 즉 여러 供給源에 接하는 購買者나, 相當한 數의 潜在的 顧客을 가지는 販賣者는 다른 여러 相對便과 去來할 수 있기 때문에, 不當한 壓力으로부터 保護된다. 그리고 이와같은 立場에 있는 去來者는 自己의 希望을 要求할 수가 있고, 또한 相對便으로 하여금 適當한 要求를 하게끔 說得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去來者들의 競爭關係는 各去來者들에게 자기의 成果를 改善하고, 보다 有利한 條件을 提供케 하는 誘因을 提供한다.

以上과 같은 Edwards의 7個의 基準은 나중에 W. Adams에 의하여 6個의 基準으로 集約되어 가장 重要한 有效競爭의 基準으로 採用되고 있다. 즉 Adams의 有效競爭의 條件<sup>(54)</sup>은 ① 販賣者와 購買者가 選擇行爲를 할 수 있도록, 實質적으로 同一한 製品에 對하여 多數의 販賣者와 購買者가 어느程度 있을 것, ② 市場으로의 進入 및 重要한 原料로의 接近을 위한 法律的 및 經濟的 自由의 存在, ③ 市場에 있어서의 競爭者間의 暗默的 또는 明示的 共謀의 不存在, ④ 支配的 企業 또는 그 集團에 의한 明示的 또는 暗默的 強壓行爲 (coercion)의 不存在, ⑤ 어떠한 重要한 去來者 또는 그 集團에 대하여도, 法律, 政治 또는 商業的인 結託에 의하여, 그 市場에 있어서 特惠의 地位가 주어지지 않을 것, ⑥ 巨大한 企業이 어떤 市場이나 行動에 대한 營業上의 原則을 介意치 않을 程度로 多角의 生産이나 補助政策 또는 政治的 行動이 存在하지 않을 것 등인바, 이것은 모두 Edwards의 條件을 그대로 踏襲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Corwin Edwards는 Mason이 指摘한 것처럼, 個別的 購買者나 販賣者의 行動範圍에 대하여 一連의 限定을 加하는 市場條件을 가지고 有效競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그는 有效競爭의 概念을 매우 仔細하게 展開하였다. 販賣者와 購買者의 數, 共謀의 不存在 및 進入의 自由등에 加하여, 여러가지 다른 條件에 言及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重要한 條件은 多數의 購買者와 販賣者 사이에 支配的인 去來者가 存在하지 않는 것이라고 Mason은 말하고 있다<sup>(55)</sup>. 이와같은 Mason의 把握은 그가 든 構造基準의 두번째 條件에 對應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Stigler의 세가지 條件에 Edwards에 의하여 強調된 點이 加해져서, 前述의 Mason에 의한 代表的 構造基準의 네가지 條件이 形成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까닭에 Mason의 構造基準의 定義는 Stigler와 Edwards가 發展시킨 有效競爭論의 線上에서 이것을 綜合한 것으로 認識되어야 한다.

(54) Walter Adams, "Public Policy in a Free Enterprise Economy," Walter Adams ed., *The Structure of American Industry*, 3rd ed., 1961, pp. 554~55.

(55) Mason, *op. cit.*, p. 354, footnote.

以上에서 우리는 構造基準의 內容을 그 代表的 論者를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市場構造로써 反트러스트政策의 基準으로 삼는 경우에는, 評價하기 困難한 成果基準에 比하여 一見 容易한 것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事實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가장 重要한 構造基準의 條件의 하나인 企業數만 하더라도, 各産業의 事情에 따라서 相異해야 하며, 一律적으로 適當한 數字를 決定할 수는 없다. 勿論 完全競爭에서 前提되어 있는 數보다도 적은 것은 當然하지만, 産業別의 數는 市場成果에 의하여 判斷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事情은 다른 세가지 條件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構造基準論에 屬하고 있는 學者로서는, Stigler, Edwards, Adams 以外에 Dirlam, Kahn 등이 있음을 附言해 둔다<sup>(56)</sup>.

#### 4) 成果基準論

우리는 앞에서 成果基準에 대한 Mason의 定義를 紹介하고, 그것은 바람직한 市場成果를 有效競爭의 基準으로 하려는 立場이며, Adelman, Markham 및 Bain 등에 의하여 主張되었음을 言及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論者를 中心으로하여 보다 綿密한 考察을 하려 한다. 그들의 主張은 構造基準을 批判하는 形式으로 展開되고 있으므로, 全體的으로 보아 統一性を 缺如하고 있으나, 企業과 産業의 效率性(efficiency)이나 進歩性(preprogressiveness)과 같은 바람직한 成果를 重要視하고 있는 것은 共通의이라고 할 수 있다.

Adelman은 競爭이 市場의 構造要因, 특히 規模와 集中狀態에 依存하지 않음을 強調한다. 즉 그는 “오늘날의 産業集中은 今世紀初에 比하면 全體的으로 보다 增大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 그것은 時間的으로 또는 市場에 따라서 一律的은 아니었다. 規制된 獨占(regulated monopoly)이 아닌 産業을 大觀하면, 競爭의 減退는 없었고, 그 競爭을 左右하는 것은 規模나 集中 그 自體가 아니라, 市場行動(market behavior)과 市場規制(market control)이다”<sup>(57)</sup>라고 主張한다. 또한 그는 “全體的 實情을 考慮한다면, 競爭의 減退라고 할 根據는 없다.……수 많은 分野에서 價格競爭은 어느 程度 減退한것이 事實이지만 그러나 流通分野에서는 大企業이 出現하여 價格競爭을 導入하기 以前에는 價格競爭은 거의 없었으며, 바로 ‘農民의 벗은 하나님과 「시어즈·로우백」(Sears-Roebuck)’ 뿐이었던 것이다. 都市의 低所得家計도 체인스토아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느낄 것이다. 일찌기 어떤 上

(56) J.B. Dirlam and A.E. Kahn, *Fair Competition*, 1954, A.E. Kahn, “Standards for Antitrust Policy,” *Harvard Law Review*, Vol. LXVII, 1958, reprinted in R.B. Heflebower and G.W. Stocking ed., *Reading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1958.

(57) M.A. Adelman, “Effective Competition and the Antitrust Laws,” *Harvard Law Review*, Sept. 1948, p. 1290.

院議員은 체인스토아를 ‘오늘날 美國에 있어서의 獨占의 가장 놀라운 發展’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만일 그가 말하는 獨占이 다만 規模를 意味한다면, 그의 主張은 確實히 옳았지만, 만일 市場行動을 意味한다면, 確實히 틀렸다<sup>(58)</sup>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그는 市場構造보다도 競爭의 行動에, 그리고 價格競爭뿐만 아니라 品質競爭, 宣傳競爭과 같은 非價格競爭(non-price competition)의 出現에도 注目하는 것이다.

規模나 集中과 市場規制와의 關係는 確實한 것도 아니고, 單純하지도 않은 것이 事實이다. 다음의 이야기는 “規模가 작은 몇개의 販賣者가 獨占의 行動을 하는 非正常的으로 보이는 경우를 說明하고, 또한 競爭에 대한 보다 나은 理解를 위하여” Adelman 이 前掲의 論文에서 假想的으로 叙述한 有名한 獨占行動의 例話(Parable of Monopoly Behavior)<sup>(59)</sup>이다.

“어떤 都市에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던 商店이 開設되었다고 假定하자. 그 商店의 所有者는 近處의 競爭者로부터 距離的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不完全하게 保護되고 있는 地域的 獨占者이다. 그가 받는 利潤 때문에 새로운 商店이 이 땅에 誘致되고, 그 市場은 그들 사이에서 分割된다. 그들 各自에게는 超過能力이 있기 때문에, 營業을 擴大하는 費用은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價格을 이러한 營業擴大의 낮은 費用(附加的 費用)까지 引下하려는 不斷한 誘因이 存在한다. 왜냐하면 費用을 超過하는 이러한 價格으로 조금이라도 販賣量을 增大시키는 것은 利潤을 增大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公開的인 價格引下는 곧 反應을 받기 때문에 有用하지 않다——만일 그렇다면 다만 兩者의 利潤을 떨어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꼴든 顧客들은 價格에 대단한 關心은 없다. 곧장 그들의 注目을 끄는 서비스의 增加, 보다 많은 프리미엄의 提供 및 보다 많은 廣告가 보다 바람직하게 된다. (특별한 價格으로 몇개의 커다란 賣上을 올리기도 하면서) 兩쪽 모두 그런 일을 하면, 費用은 上昇하고, 價格은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올러진다. 兩者間의 協定은 없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正常的인 일이다. 價格이 上昇하면, 賣上은 減少하고, 過剩能力은 增大한다. 서비스와 廣告는 그 負擔을 增大시킨다. 價格引下의 誘因은 增大하지만, 費用이 높아질수록 이것은 더 危險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2개의 完全히 獨立된 企業은 共謀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들은 다만 公正한 利潤만을 바라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그보다도 더 적게 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消費者에게 負擔을 지우게 하고 搾取하고 있는 것이다. 마

(58) Adelman, *op. cit.* pp. 1296~97.

(59) Adelman, *op. cit.*, pp. 1297~8.

침내 어떤 卑劣한 惡漢이 妥當한 利潤보다도 더 큰 利潤을 탐내서 近處에 슈퍼마켓을 열고, 頑強한 價格競爭을 벌리고, 그들을 그 營業으로 부터 追放해버린다——그러나 이에 앞서서 그들은 그가 ‘不公正’하다고 激烈한 批判을 加하고, 그의 ‘費用以下の 販賣’ (이 費用은 그들의 費用이지, 그의 費用은 아니지만)를 禁止시키는 立法을 歎願하고, 또한 다른 여러가지 方法을 取하는 時間을 가진다.”

Adelman은 以上の “寡占天國의 盛衰(rise and decline of oligopoly heaven)”에 관한 例話로써, 그 基本的 特徵이 規模나 協定이 아니라, 制限된 產出量, 높은 價格 및 過剩能力이라는 것, 그리고 有效競爭이란 바로 이러한 것을 排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以上에 의하여 우리는 그가 通常의 意味의 構造基準의 有效競爭論者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Adelman의 有效競爭의 基準은 어떤 것인가? 그는 어떤 產業이 有效競爭이기 위해서는 一定한 前提條件을 滿足시키는 것과 同時에, 어떤 成果를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意味에서 그는 成果基準論者라고 할 수가 있다. 그가 들고 있는 前提條件에 의하면, 첫째로 有效競爭은 企業의 規模나 產業集中과는 密接한 關係가 없다. 그것은 婦人服產業과 같은 多數의 小企業이나, 自動車產業과 같은 少數의 大企業이나, 또는 販賣業과 같은 크거나 작은 企業間에도 成立한다. 둘째로 競爭을 위해서는 企業間에 販賣나 購買上의 共謀가 없는 것이 必要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購買者나 販賣者에게도 商品의 型을 選擇하는 것까지 包含해서 多數의 選擇이 주어질 必要가 있다. 그리고 셋째로 有效競爭을 위해서는 特定市場에 競爭的要因과 獨占的要因이 適當히 混合될 必要가 있으며, 조그만한 要因의 變化라도 成果를 크게 變化시켜야 한다. 以上の 諸條件은 前述한 바와 같은 代表的인 構造要因들은 아니다. 그가 成果로 들고 있는 것은 價格下落, 品質改善 및 費用減縮과 革新을 위한 끊임없는 研究등이다. 그리고 그것의 惠澤은 보다 高水準의 產出量과 보다 迅速한 進歩를 가져오는 것이다<sup>(60)</sup>.

上述한 바와 같이 Adelman은 構造基準을 全面的으로 排除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그것을 前提條件으로 하여 成果를 強調하고 있음을 注目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主張은 最初이면서도 이미 成果基準이 가지고 있는 가장 基本的인 事項을 包含하고 있다. “The Sherman Act and ‘Workable’ Competition”의 論文에서 構造基準論者로서 Corwin Edwards를 들고 있는 McDonald는 同論文에서 成果基準의 경우에는 Adelman을 例로 들어 叙述하고 있다<sup>(61)</sup>. Adelman은 成果基準을 主張한 初期의 代表者로 보아야 한다.

(60) Adelman, *op. cit.*, p. 1303.

成果基準論의 代表者로서 다음에는 J. W. Markham의 所說을 考察하자. Markham의 構造基準論 批判의 特質은 그것이 完全競爭과 마찬가지로 動的 要因을 無視한 것이라는 것, 公共政策으로서 具體的인 矯正策을 隨伴하지 않는 機械的 適用의 可能性이 있다는 것, 또한 構造基準이라고 하더라도 價値判斷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등을 指摘한데 있다. 우리는 그의 論文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sup>(62)</sup>을 中心으로 하여 먼저 이 點을 밝혀 두기로 한다.

그에 의하면 從來의 有效競爭에 관한 大部分의 定義는 大體로 傳統的인 完全競爭의 定義를 模倣한, 말하자면 有效競爭의 諸條件을 羅列하는 方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定義는 完全競爭에 가까운 產業이나 生産物分化가 없는 市場에 適用하는 경우에는 커다란 困難이 없으나, 獨占의競爭이나 寡占市場에 適用하면 그러한 定義의 弱點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市場이 實際로는 公共政策의 커다란 關心分野인 것이다. 그리하여 Markham은 美國의 레이언(rayon) 產業을 여러가지 有效競爭의 定義를 테스트할 수 있는 典型的 寡占產業으로 들고, 이것을 例로 하여 構造基準의 難點을 指摘하고, 보다 有用한 有效競爭의 基準을 示唆하려고 한다.

美國의 레이언產業은, 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特質을 가지고 있다. ① 1920年以後로 集中率은 減少하였다. ② 主로 規模의 經濟性으로 말미암은 進入障壁(barriers to entry)의 原因으로, 14個社로 된 寡占狀態에 있다. ③ 高度의 競爭의 條件에서 期待되는 것 같은 投資와 產出量의 增大 및 價格과 投資收益率의 急激한 下落傾向을 가지고 있다. ④ 레이언의 賣上이나 天然纖維 價格에 比하면, 레이언의 價格은 高度의 短期安定性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개의 景氣循環의 過程에서는, 天然纖維의 價格과 같은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 ⑤ 레이언 生産者間의 價格關係는 景氣循環의 局面에 따라서 相異가 있으나, 相當히 分명한 價格先導制(price leadership)가 보인다. 그렇지만 그것은 不況期에는 *de facto* 市場價格의 *de jure* 承認으로 된다. ⑥ 레이언의 產出量도 販賣量에 比하면 短期的으로 安定的이다. ⑦ 以上の 諸點에서 본다면, 만일 레이언企業이 極大利潤을 追求한다면, 그들의 價格支配力은 매우 限定되리라 생각된다. ⑧ 市場이 正常狀態에 있으면 그들은 價格競爭에 그다지 힘을 쓰려 하지 않으나, 技術革新, 需要促進등의 面에서는 活潑한 競爭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⑨ 輸入關稅의 引下로 레이언의 輸入이 增大할 可能性이 있다.

(61) John McDonald, *op. cit.*, 243~44.

(62) J.W. Markham,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0, pp. 349~61, reprinted in R.B. Heflebower and G.W. Stocking ed., *Reading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1958, pp. 83~95.

Markham은 以上과 같은 諸事實을 考慮한다면, 同産業은 J. M. Clark의 基準에도, 또한 構造基準의 代表者인 G. J. Stigler의 3基準이나, Corwin Edwards의 7基準에도 合格하고, 그런 意味에서 有效競爭임을 斷定할 수 있다고 指摘한다. 그러나 그는 以上の 3인의 定義에 의한 判斷에는 價値判斷이 包含되어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市場特質을 아무리 排列해 보더라도, 모든 經濟學者의 同意가 얻어지거나, 또는 어느 産業이 有效競爭의이라고 一義的으로 斷定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換言하면, '創造的 破壞의 動態的 過程(dynamic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sup>(63)</sup>에 信賴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有效競爭의市場이더라도, 古典派的 完全競爭의 觀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有效競爭的이 아닌 것이다. 結局 어떤 産業의 有效競爭은, 그 産業의 構造의 特徵뿐만 아니라, 그것을 形成한 動的過程(dynamic process) 및 취해져야 할 公共政策이 가져올 影響등을 考慮한 然後에 비로소 判斷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Markham의 主張이다.

그가 들고 있는 레이언産業에는 比較的 少數의 大企業, 短期的 價格安定性 및 價格先導制등이 있어서, 이런 것이 古典派的 經濟學者의 競爭市場의 條件과 다른 커다란 點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動態的으로 보면 競爭의 狀態에서 期待할 수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價格과 利潤率의 急激한 下落, 最大 1社나 最大 4社의 市場占有率의 漸次的 減少 및 企業數의 增加가 있었다. 그리고 레이언의 質도 크게 改善되고, 生産量도 增大하였다. 그러므로 企業數, 生産能力의 集中度, 價格, 利潤 및 產出量의 長期的 動態에 의하여 判斷할 때, 公共政策의 目標로 생각되는 것이 競爭的 要因에 의하여 自動的으로 達成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레이언産業이 有效競爭의인가 아닌가를 判斷하는 또 하나의 問題는, 上述한 것과 같은 競爭的 市場要因에 의하여 達成되는 것보다 더 有效하게, 大企業의 市場支配力을 減縮시킬 수 있는 公共政策이 利用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레이언産業의 實情을 보면, ① 工場이나 企業의 規模는 아직 規模의 經濟性으로 보아 過大하지는 않으며, ② 價格面에서는 다른 纖維部門으로부터 強力한 競爭을 받고 있고, 또한 ③ 技術的 條件때문에 管理價格에 의한 失業도 發生하지 않으므로, 지금의 發展段階에서는, 企業의 規模를 法律的으로 制限하는 것은 正當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公共政策의 採用은 利益보다도 損失을 크게 할 可能性이 있다고 본다.

以上이 美國의 레이언産業의 實態分析에 의한 Markham의 構造基準批判의 主要內容이다. 一般的으로 構造基準를 適用하는 경우의 問題點으로서 Markham이 指摘한 것은 다음 (63) J.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1950, chap. 7.



의 두가지 點으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必要한 條件을 羅列하여 有效競爭을 定義하는 構造基準은, 產業의 發展을 形成하는 動態的 要因을 無視하는 것이 된다. 이를테면 어떠한 構造基準에도 包含되는 靜態的 條件의 하나인 企業의 數를 例로 하면, 어떤 產業에서 特許가 滿期로 된 경우, 그 產業의 企業數가 1,2年內에 ‘어느 程度 多數’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產業을 先驗的으로 非有效競爭的이라고 判斷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時間經過와 함께 생기는 產業構造의 特質의 變化를 有效競爭의 概念에 導入하려 한다면, 構造基準의 諸條件은 모든 產業에 適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產業에서도 그 發展段階가 相異함에 따라서 適用될 수 없게 된다. 둘째로 公共政策에 의하여 그 產業을 보다 競爭的이게 하는 確實한 方法이 없는 경우에, 靜態的 定義에 의하여 그 產業이 有效競爭的이 아니라고 斷定하는 것이 價値있는 일인지가 問題로 된다. 一定한 構造基準을 嚴格하게 適用하는 것은 適當한 罰則이나 改善策을 講究하기 前에는 許多한 違法行爲 만을 만들어내고 極端的인 不安狀態를 낳을 可能性이 있다.

上述의 前提에 立脚하여 Markham은 有效競爭의 概念에 接近하는 한가지 方法으로서, 特定한 構造의 特質을 強調하기 보다는, 어떤 產業의 全體의 成果(over-all performance)를 가능한 公共政策에 비추어서 評價하기를 強調하고 있다. 이와같은 問題意識下에서, 1次的 近似로서 定義한 Markham의 有效競爭의 原理는 다음과 같다. “市場의 構造의 特質과 그것을 形成한 動態的 要因이 充分히 檢討된 뒤에, 또한 社會的 損失에 比하여 보다 많은 社會的 利益을 가져오려는 公共政策의 措置에 의하여 明示的 變化가 나타날 可能性이 없을 때, 그 產業은 有效競爭的이라고 判定된다.”<sup>(64)</sup>

以上の 定義는 一般的適用이 不可能한 構造基準의 弱點을 回避하고, 또한 公共政策의 樹立者가 가장 留意하지 않으면 안될 일, 즉 適當한 矯正策을 處方하는 可能性의 與否를 重要視하는 것에 特徵이 있다. Markham이 有效競爭을 成果基準的 立場에서 以上과 같이 定義한 것은, 構造基準은 公共政策의 手段으로서 不適當하다는 認識에 依據하고 있다. 즉 그러한 認識이란, 構造基準은 產業間의 構造的 差異나, 또는 같은 產業의 경우라도 그 發展段階의 相異를 考慮하지 않고, 또는 처음부터 政策樹立當局의 政治的, 經濟的 制約을 생각하지 않고, 公共政策的 目標을 위한 定義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定義에 따른다면, 有效競爭의 基本目標 即 產業이 어떠한 경우에 公共의 利益에 反하고, 어떠한 矯正方法이 可能한가가 無視된다는 것이다.

(64) Markham, *op. cit.*, *Reading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p. 94.

成果基準에 대한 보다 體系的이고 具體的인 精密化는 다음의 Bain 을 기다려야 하나, 構造基準에 대한 Markham 의 明確한 批判은 크게 傾聽할 點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以上에서 成果基準論이 市場成果를 重要視하면서도 결코 構造要因을 完全히 無視하는 것이 아니고, 動態의 面과 政策的 面을 아울러 考慮하는 것임을 確認하였다. 그러나 아직 構造要因과 成果와의 關係가 明確히 된 것은 아니었다. 이 問題를 成果(results), 競爭의 行動의 型(patterns of competitive behavior) 및 市場構造의 特質(character of market structure) 間的 關聯(association)으로 把握하고, 構造要因과 成果와의 關聯에 관하여 假說을 세워서 有效競爭論의 體系化를 試圖함과 아울러, 오늘날의 產業組織論으로의 길을 닦은 것은 J.S. Bain 의 論文 “Workable Competition in Oligopoly: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Some Empirical Evidence”이다. 이 論文은 有效競爭에 관한 Clark 의 古典的 論文보다 10 年後에 發表<sup>(65)</sup>되었는데, 그 當時까지의 10 年間의 理論的 進歩와 經驗的 研究에 비추어서 Clark 의 所說을 再考察하고, 또한 그것을 修正・擴張하려는 것이었다.

Bain 은 有效競爭의 定義를 다른 成果基準論者와 마찬가지로 市場의 ฟู로세스에서 나오는 成果를 基準으로 하고 있으나, 그러한 定義만으로는 몇가지 難點이 있다고 보고 非有效競爭(nonworkable competition)<sup>(66)</sup>의 定義도 아울러 考察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競爭이 有效하게되는 것은, ① 生産의 效率이 達成 가능한 最良의 狀態에 크게 接近하고, ② 産業 產出고가, 良好한 資源配分에 一般的으로 合致하는 水準보다도 훨씬 낮게 制限되거나, 훨씬 超過하지 않으며, ③ 過度한 資源이 販賣促進의 努力에 쓰여지지 않고, ④ 利潤은 必要한 限度보다도 相當히 높아서는 안되지만, 投資를 報償하고, 社會적으로 所望되는 革新을 誘發할 程度로 높고, ⑤ 이러한 革新을 위한 機會가 크게 無視되지 않으며, 또한 ⑥ 價格의 變化가 經濟의 循環을 刺戟하기보다도 循環的 變化에 反應하는 경우<sup>(67)</sup>이다. 以上이 Bain 의 有效競爭의 定義이다.

Bain 은 이와같은 定義가 成果目標의 確定, 그리고 이 目標에서 離脫하는 것을 어느 程度 容認할 것인가라는 問題點을 包含하고 있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왜냐하면 實際로 ①

(65) J.M. Clark 의 論文 “Toward a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은 1940 年 6 月號의 *American Economic Review* 誌上에, J.S. Bain 의 이 論文은 1950 年 5 月號의 同誌, No. 2 에 發表되었다.

(66) Bain 은 unworkable competition 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J.S. Bain, “Workable Competition in Oligopoly: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Some Empirical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0, p. 38.

(67) Bain, *op. cit.*, pp. 36~37.

오늘날의 經濟理論은 嚴密하고도 意味있는 目標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② 實際의 行動을 이와같은 目標에 의하여 評價하는 것은, 測定의 難點과, 靜態的 均衡의 目標을 動態的 過程에 適用하는 困難때문에 容易하지 않고, 또한 目標로부터의 離脫을 어느 程度 容認할 것인가도 觀測者의 *ad hoc* 한 判斷에 의존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Bain은 매우 暫定的인 것이라고 하면서, 寡占에 있어서의 非有效競爭의 一般的 徵候로서, ① 投資에 대한 正常收益을 長期的으로 相當히 超過하는(또는 持續적으로 그것을 下廻하는) 平均利潤率, ② 大多數 企業의 規模가 最適範圍를 크게 離脫하는 것, ③ 趨勢的 變化나 豫備的인 適當量으로 볼 수 없을 程度의 慢性的 過剩生産能力, ④ 總費用의 一定比率을 超過하는 競爭의 販賣費用, 또는 ⑤ 費用減縮의 技術採用의 持續的 遲延 또는 購買者의 利益으로 되는 製品變更에 대한 持續的 壓迫<sup>(68)</sup>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은 間接的인 有效競爭의 判斷方法을 導入한 것으로서, Bain의 非有效競爭의 定義이다.

Bain은 以上과 같이 成果를 基準으로 하여 有效競爭과 非有效競爭의 定義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成果의 實效性(workability)을 決定하는 實行可能한 條件을 設定· 類別하기 위하여, 다시 나아가 이러한 成果와 그 決定要因間의 關聯을 檢討하고 있다. 不完全한 것이지만 이러한 分析方法을 示唆한 것은 Clark이었다. 그러나 이것의 體系化를 企圖한 것은 Bain의 功績에 屬한다. 다음에 이러한 關聯을 Bain을 따라서 考察하기로 하자.

Clark은 市場成果의 決定要因을 主로 市場構造의 特質에서 求할 것인가, 또는 競爭의 行動에서 求할 것인가의 基本問題를 이미 提起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는 寡占의 範疇에서는 構造보다도 競爭의 行動에 오히려 重點을 두는 것이었다. 이에 反하여 Bain은 成果와 市場構造와의 潛在的 關聯을 重視하는 立場을 취한다. 그 理由는, 大部分의 競爭 行動은 結局 그 背後에 있는 市場構造의 特質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생각되므로, 市場構造와 成果와의 明確한 關係가 競爭의 有效性的의 보다 基本的인 決定要因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어떤 競爭의 行動으로부터 나오는 成果는 몇가지 構造的 市場特質로부터 決定的 影響을 받으므로, 競爭의 行動과 成果와의 關聯은 單純하지도 않고, 決定的도 아니라는 데 있다. 따라서 Bain은 먼저 競爭의 有效性和 市場構造와의 關聯을 強調하고, 그 過程에 있어서 結果로서의 또는 決定要因으로서의 競爭의 行動의 複雜한 役割을 考慮하는 立場을 취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Bain은, 競爭의 行動의 型이 成果에 影響을 미치지만, 市場構造의

(68) Bain, *op. cit.*, p. 37.

特質은, 直接的으로 또는 競爭의 行動의 型에 대한 影響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成果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므로, 市場構造의 特質과 成果와의 關聯을 基本的으로 重要視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問題는 寡占의 產業에서 市場構造와 競爭의 有効性과의 關聯이 實際로 存在하는가이다. 勿論 이 問題는 最終的으로는 實證的 研究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論文에서는 Bain은 이러한 關聯에 관하여 假說의 說明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Bain은 寡占企業의 競爭의 行動의 型을, ① 實效적이고 嚴密하게 지켜지는 共謀, ② 內部 軋轢, 秘密의인 價格變更等으로 말미암은 不完全한 共謀, ③ 從來의 屈折需要曲線의 型, ④ 無秩序한 競爭(chaotic competition)乃至 比較的 積極的인 價格競爭의 네가지로 分類하였다. 그리고 進入條件, 集中度, 購買者의 數와 規模, 生産物差別化등의 構造要因이, 獨占의 產出量制限의 程度, 利潤, 販賣費用 및 長期平均費用의 水準等 市場成果와 어떠한 關聯을 가지는가를 몇가지 경우에 관하여 檢討하고, 市場構造와 成果와의 사이에는 重要的 關聯이 있는 것을 假說로서 示唆하였다. 勿論 그것들은 嚴密한 法則이라고 하기보다는 一般的인 平均的 傾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가 結論으로서 導出한 假說은 다음과 같다<sup>(69)</sup>.

1. 進入이 封鎖되어 있거나(blockaded) 매우 困難하고, 또는 높은 販賣者集中의 狀態에 있는 寡占——이것은 드문 예는 아니다——의 경우에는 一般의 有效性을 期待할 수는 없다. 相當한 程度의 効率性은 期待되지만, 高水準의 價格과 利潤이나, 相當한 產出量制限이 豫期된다. 만일 生産物差別化가 있으면, 過度한 販賣費가 支出될 것이다. 그러나 購買者가 少數라면 有效性에 도움을 준다.

2. 相當한(moderate) 進入障壁과 相當한 集中狀態에 있는 寡占의 경우——通常의 경우로 생각된다——에는, 持續的인 ‘破滅的’ 價格形成만 없다면(理論的으로는 이런 일이 長期的傾向으로서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一般的으로 寡占中에서 가장 有效性에 近似한 것이다. 効率は 相當히 良好하고, 價格과 利潤은 높지 않다. 그러나 生産物差別化가 있으면, 販賣費用이 過度하게 되므로, 이 寡占의 範疇에 屬하면서 同質의 製品을 生産하는 產業이 가장 有效競爭的이다. 購買者들의 支配力이 過度하지 않다면, 그 數가 적은 것은 플러스로 된다.

3. 進入이 容易하고(寡占에서 進入이 容易한 것은 極히 드물다고 생각된다) 集中이 높

(69) Bain, *op. cit.*, p. 46.

거나, 相當한 程度인 寡占에서는, 滿足스러운 有效競爭의 成果를 期待할 수는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그 產業이 寡占狀態에 있는 限, 效率, 價格 및 產出面에서 非有效競爭의 可能性 또한 적어도 같은 程度로 存在한다.

以上の Bain 의 假說은 極히 限定된 範圍의 市場構造의 特質과 重要한 成果만을 考察한 것이며, 또한 經驗的 研究에 의하여 立證되어야 할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 假說은 寡占 狀態下에서 어떤 要因으로 合成된 市場構造가 比較的 有效한가를 追究하는데 有用한 手段임은 틀림이 없다. 競爭의 有效성과 寡占의 市場構造와의 關聯에 관한 以上の 假說은 勿論 暫定的인 것이고 思辨的이다. 그러나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그것들 사이에 本質的이고 論理的으로 說明可能한 關聯이 있는 것을 認定할 수 있다. 이러한 假說을 보다 體系化하고, 經驗的 研究에 의하여 立證·補完하는 일은 오늘날 Bain 에 의하여 크게 發展하게 된 產業 組織論의 主된 課題로서, 우리는 이것을 次章에서 考察할 것이다.

以上에서 Adelman, Markham 및 Bain 등의 主張을 中心으로 하여 成果基準論의 內容을 考察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構造基準를 全面的으로 排除하는 것이 아니라, 效率性, 進歩性 등의 成果的 見地에 서서 아울러 考慮하려는 立場이고, 靜態的 性格을 가지는 構造基準의 缺陷을 動態的 見地에서 補完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것은 反트러스트政策의 施行上 너무나 嚴格한 構造基準의 矛盾을 除去하고, 무엇보다도 實現可能한 現實의 政策의 經濟的 基準임을 意圖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成果基準論도 또한 많은 論者에 의하여 그 難點이 指摘되고 있다. 첫째로 構造基準이 一旦 數量的이고 客觀的인 性格을 가지는 것임에 대하여, 成果基準은 質的이고 主觀的이므로, 數量的 取扱이 困難하다. 이를테면 Mason 은 “企業이나 產業의 成果에 관한 統計的 資料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 產業의 어떤 企業의 成果를 이 資料에 의하여 評價하기가 매우 困難함을 否認할 수가 없을 것이다”(70)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成果基準에 의하는 경우에는, 企業은 많은 點에서 政策當局의 恣意에 從屬되는 可能性이 있다. 또한 以上과 같은 數量的 把握이 可能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成果를 어느 程度로 達成할 것인가의 基準自體의 確立이 困難하다. 또한 끝으로 成果基準의 立場은 企業의 善意나 潛在的 競爭에 지나친 信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1).

結局, Kahn 도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成果基準은 자칫하면 反트러스트被告를 無罪

(70) E.S. Mas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onopoly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reprinted in E.S. Mason,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e Monopoly Problem*, 1967, p. 368.

(71) Harvey J. Levin, ed., *Business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A book of Readings*, 1958, p. 6.

放寬할 根據로 利用될 可能性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競爭制度를 保護하는 法律的 手段을 弱화시키고, 그들에게 無限定한 法律上의 逃避口를 提供할 危險性이 있기 때문이다. 成果基準이 直接, 間接으로 “獨占을 擁護하는 役割을 遂行한다”고 主張하는 構造基準論者 Kahn의 指摘은, 充分히 注目할만한 根據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sup>(72)</sup>.

## 2. 兩基準의 性格

有效競爭論은 上述한 바와 같이 一旦 構造基準論과 成果基準論으로 나누어지지만, 그것들은 모두 基本的으로 完全競爭(또는 不完全競爭)보다도 現實的인 競爭基準을 마련하려고 하는 點에서 共通의이다. 換言하면 兩基準은 政策概念으로서 窮極的으로는 一般的인 經濟政策의 目標를 追求하고 있다.

共通의 目標를 追求하는 構造基準과 成果基準이 相異한 特質을 가지고 그 力點을 달리 하고 있는 原因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構造基準論者가 美國의 傳統的인 個人主義的 民主主義를 固守하고, 그것을 위하여 經濟理論에서는 完全競爭的인 것에 依存하려는 傾向이 있음에 대하여, 成果基準論者는 그러한 民主主義의 傳統的 理念보다도 오히려 經濟的 效率主義에 重點을 두고, 理論的으로는 Schumpeter의 動態的 理論에 크게 傾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構造基準에서는 그것이 有效競爭의 基準인 以上, 市場에 관한 完全한 知識이나, 資源의 完全可動性과 같은 非現實的 前提는 除去되고 있고, 必要로 하는 企業數나 規模의 條件도 어느 程度 緩和되어 있다. 그러나 構造基準論者들은 “購買者나 販賣者에게 相當히 많은 選擇의 機會를 附與함에 의하여 어떤 單一한 販賣者나 購賣者의 支配力을 制限해야 한다”<sup>(73)</sup>고 主張하고, 그런 까닭에 그 基準內容도 完全競爭의 그것과 크게 類似한 內容과 形式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構造基準이 相當히 多數의 企業과 比較的 小規模의 企業規模 및 相當히 自由스러운 進入등의 條件을 要求하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構造基準은 完全競爭의 基準이 가지는 問題點인 非現實的 前提와 靜態的 性格으로부터 完全히 脫皮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構造基準이 反트러스트政策基準으로서 一般의 支持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一次的으로 政策基準으로서의 明確性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傳統的 民主主義 乃至 反트러스트思想이 社會의 基本理念으로서 적어도 이데올로기의으로 強力하게 支持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構造基準의 立

(72) A.E. Kahn, “Standards of Antitrust Policy,” *Harvard Law Review*, vol., LXVII, 1953, reprinted in R. B. Heflebower and G.W. Stocking ed., *op. cit.*, pp. 361~64.

(73) Harvey J. Levin ed., *op. cit.*, p. 4.

場은 이런 意味에서 經濟成果의 面以外에 理念의 面에서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成果基準도 基本的으로는 民主主義思想 乃至 反트러스트 이데올로기를 無視하거나, 競爭原理를 全的으로 拋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成果基準論者는 “販賣者가 多數로 되면 少數의 경우보다도 費用이 높아지고, 短期限界費用까지 價格을 떨어뜨리는 競爭의 壓力 때문에 革新이 阻害되고, 또한 固定費用이 높은 產業에 循環的 不安定性이 強化되거나 하여, 結局 有效競爭의 構造가 때로는 效率的, 進步的 또는 安定的 經濟成果와 矛盾”(74)되므로 企業의 成果를 보다 重視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企業의 數가 少數로 되거나, 規模가 커지는 것도 어느 程度까지 認定하는 彈力的인 態度를 取하는 經濟的 成果主義에 立脚한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立場은 構造基準論者가 指摘하는 것처럼 傳統的 反트러스트思想에 반드시 忠實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英國의 Neale은 “어떤 經濟學者는 有效競爭의 概念을, 보다 正確하게는 有效獨占(workable monopoly)으로 表現되는 것같은 意味로 쓰고 있다”(75)고 하여 成果基準의 一面을 찌르고 있다. 成果基準은 이와같이 反트러스트政策의 基準으로서 彈力的 性格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有效競爭의 基準으로서 存續하고 있는 것은, 根本的으로는 美國에 있어서의 確固한 反트러스트思想의 傳統과 背景에 크게 힘입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獨占을 擁護하는 Schumpeter는 가장 有效한 競爭은 通常 大企業에 의하여 導入되는 새로운 製品, 生産方法 및 組織과 代替되는 創造的 破壞(creative destruction)의 過程이라고 主張하였다. 그에 의하면 實際로 市場支配力を 制限하는 競爭은 “新商品, 新技術, 新供給源, 새로운 形態의 組織에 의한 競爭, ……費用이나 品質面에서 그러한 企業이 決定的으로 有利한 競爭이고, 現存企業의 利潤과 產出의 限界를 넘어서 그들의 基礎와 全生存이 달려있는 競爭”이다. “이와같은 競爭은 大砲로 窓門을 부수는 것과 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效果적이다.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競爭은 그것이 現存할 때는 勿論이고, 다만 그것이 不斷한 威脅을 주고 있을 경우에도 有力하다. 그것은 攻擊하기 前부터 規制한다. 실사 그 分野에 다만 한 사람밖에 없더라도 企業家は 자기가 競爭的 狀態에 있는 것으로 느낀다……. 全部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結局 完全히 競爭的인 形態와 極히 類似한 行動을 強要할 것이다”(76).

(74) Harvey J. Levin, *op. cit.*, p. 5.

(75) A.D. Neale, *The Antitrust Laws of the U.S.A.*, 1960. p. 485.

(76) Schumpeter, *op. cit.*, pp. 84~85.

이와같은 Schumpeter의主張은 大企業의 技術的인 動力(dynamism)이 새로운 製品이나 生産方法의 導入과 消費者의 選擇을 增大함으로써 經濟를 보다 競爭的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經濟에 가장 貢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結果는 어느 程度의 市場支配力을 容認하는 것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主張되었다.

成果基準論은 經濟의 動態的 過程과 大企業의 革新의 役割을 強調하는 點에 있어서 以上과 같은 Schumpeter의 經濟理論을 背後에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點은 例를 들면, McDonald의 論文<sup>(77)</sup> 및 Fainsod 등의 著書<sup>(78)</sup> 등에 의하여 指摘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成果基準의 競爭은 民主主義一般이나 競爭의 利點을 결코 否定하지는 않지만, 價格競爭보다도 革新을 通하는 競爭이다. 成果基準의 立場은 現實의 政策에 관하는 限, 理論的으로 構造基準에 比하여 優越한 點도 있으나, 反面 너무나 市場支配力의 問題를 輕視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立場은 完全競爭의 基準 乃至 構造基準이 內包하는 非現實의 前提와 靜態的 性格을 一旦 모두 克服은 했다고 하겠지만, 同時에 傳統的인 反트러스트理念도 變質 乃至 緩和하는 傾向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成果基準은 經濟의 效率主義와 傳統의 反트러스트主義를 어떻게 調和시킬 것인가 하는 問題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cDonald는 앞에서 본 것처럼 傳統的인 競爭理念의 唱導者인 Hayek와, 大企業을 擁護하는 Schumpeter를 各各 構造基準과 成果基準의 兩極端으로 들고 있다<sup>(79)</sup>. 그러나 이와같은 對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美國에 있어서는 傳統的 民主主義를 信奉하고, 反트러스트政策의 存在를 前提로 하고, 또한 政策基準으로서 有效競爭基準의 必要性을 認定하는 共通의 基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兩基準의 實際의 對立은 그렇게 激甚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은 美國의 特殊한 現象인 것이며, 만일 成果基準이 民主主義나 反獨占思想의 傳統을 가지지 않는 社會에서 採用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獨占의 容認 乃至 競爭排除를 위한 根據로서 利用될 念慮가 있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 IV. 有效競爭論의 展開

##### 1. 展開의 方向

有放競爭의 概念은 위의 論議에서 보더라도 論者에 의하여 可變的이고, 綜合的 體系化가 不完全한 一面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傳統的 完全競爭 모델의 缺陷을 밝히는데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 그리고 有效競爭論者들의 研究는 '어떤 犧牲을 치루더라도 競

(77) J. McDonald, "The Sherman Act and 'Workable' Competition," *Fortune*, Jan. 1950, reprinted in P.A. Samuelson, R.L. Bishop, J.R. Coleman ed., *Readings in Economics*, 2nd ed., 1955.

(78) Merle Fainsod, Lincoln Gordon and Joseph C. Paramountain, Jr., *op. cit.*, pp. 606~07.

(79) J. McDonald, *op. cit.*, pp. 247~48.



爭을(competition-at-any-price)'이라는 思考方式의 是正을 가져왔다. 이를테면 Clark는 適當한 數의 大規模의이고 強力한 成長企業이 小規模의 企業과 併存하는 경우에는 效率面에서 最良의 成果가 나온다고 示唆하였고<sup>(80)</sup>, Bain은 寡占인 경우에는 容易한 進入보다도 進入이 어느 程度 容易하지 않을 때, 價格이 보다 낮아지는 것을 示唆하였다<sup>(81)</sup>. 그러나 有效競爭의 概念을 反트러스트政策에 그대로 適用하는데는 어려운 問題가 있었다. 왜냐하면 法律的 判斷은 窮極의으로 事實의 問題에 還元될 수 있는 概念을 使用해야 하고, 특히 經濟의 成果를 考慮해야 하는 경우에는, 時間的으로 可變의인 性質을 가지는 經濟의 成果에 비추어서 判斷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政策面에 있어서나 理論面에 있어서나 有效競爭論을 한층 深化·發展시키는 것이 要求되었다. 有效競爭의 兩基準을 綜合하려는 立場과 產業組織에 대한 보다 徹底한 實證的 研究를 試圖하는 產業組織論(Industrial Organization)은 이러한 要求에 副應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 節(IV, 2)에서는 綜合的 立場을 考察하기 위하여, 먼저 Mason의 中間的 立場(middle view)을 다루고, 다음에 그 問題意識에 立脚하면서 '反트러스트法 研究를 위한 司法長官諮問全國委員會(The Attorney General's National Committee to Study the Antitrust Laws)'——以下 간단히 司法長官委員會라고 부른다——의 有效競爭基準을 檢討하기로 한다. 이것들은 反트러스트政策上 兩基準을 함께 適宜하게 考慮하려는 方向이다. 그리고 本章의 第3節(IV, 3)에서는 近年 美國에서 括目할 發展을 하고 있는 產業組織論을 有效競爭論과의 關聯을 통하여 吟味한다. 이것은 有效競爭의 基準을, 具體的으로 構造, 行動 및 成果의 經驗的 研究를 통하여 體系化하려는 方向이다. 產業組織論은 그 自體로서 產業組織에 관한 龐大한 體系와 內容을 가지는 것은 勿論이지만, 基本的으로는 有效競爭論의 發展의 線上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有效競爭論의 發展은 이와같이 한쪽으로는 이미 存在하고 있는, 對立되는 두가지 基準을 反트러스트政策上 綜合的으로 適用하려는 方向과, 또 한쪽으로는 產業組織의 實證的 研究를 통하여 有效競爭基準을 보다 體系化함과 아울러, 獨占禁止政策을 中心으로 하는 公共政策에 보다 合理性을 附與하려고 하는 方向을 取하고 있다. 그러나 後者의 立場에서 는 경우, 前者의 立場은 產業組織論以前의 問題意識에 立脚하는 便宜主義的 折衷이라고 볼수

(80) J. M. Clark, "The Orientation of Antitrust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s*, May 1950, No. 2.

(81) J. S. Bain, "Workable Competition in Oligopoly: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Some Empirical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0, No. 2, p. 42.

있으며, 公共政策의 科學的 解明에 그다지 寄與할 수 없음이 指摘될 수 있을 것이다. 產業組織論은 應用經濟學의 1 部門으로서, 美國의 反트러스트政策形成의 背景으로 된 “트러스트問題”와 價格理論과의 接合, 乃至 價格理論의 適用에 의한 트러스트問題의 解明으로서 成立된 것이다<sup>(82)</sup>. 그리고 獨占禁止政策은 產業組織論에 의한 經濟學的 研究에 힘입어야만 비로소 從來의 理想論的 偏見과 法解釋學의 좁은 立場으로부터 脫皮되고, 近代의인 公共政策으로서의 地位를 確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兩基準의 綜合

### 1) E.S. Mason의 立場

以上에서 우리는 有效競爭의 基準으로서 構造基準論과 成果基準論을 論할 적에, 現實經濟에 대한 反트러스트政策의 有效競爭基準으로서 兩基準中에서 어느 것을 擇할 것인가, 또 兩基準間에는 矛盾은 없는가가 問題로 되는 것을 指摘하였다. 그런데 兩基準의 對立을 Hayek 對 Schumpeter로 把握한 McDonald는 Mason의 立場을 中間的 立場(middle view)<sup>(83)</sup> 또는 二元論的 立場(dualism)<sup>(84)</sup>으로 把握하고 있다. Mason의 立場은, 兩基準중 어느 것에 重點을 둘 것인가를 明白히 하지 않고, 그것은 價値判斷의 問題라고 하고 있는 點에서, 構造基準를 重要視하면서 成果基準도 아울러 考慮하려고 하는 後述의 司法長官委員會의 立場보다도 非合理的이지만, 어느 하나의 基準이라도 現實政策上 無視할 수 없음을 指摘한 點에서, 有效競爭基準의 現實의 適用에 重要한 一步를 내디딘 것으로 보아야 한다.

Mason이 中間的 立場을 取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그의 現實認識에 의한 것이다. 즉, 그가 問題로 삼은것은 ① 企業의 規模가 그 規模의 經濟性으로 보아 바람직한 程度로 되자면, (企業規模의 經濟性의 推定은 工場規模의 經濟性보다도 困難하지만), 構造基準에 合致할 程度의 企業數로 되지 않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 ② 체인스토아가 出現하기 前의 小賣業의 경우는, 多數라는 意味에서 構造基準에 合格하지만, 바람직한 成果는 얻어지지 않았다는 것, ③ 構造基準를 採用하면 景氣循環의 過程에서 不況期에 效率的인 企業이 倒産하는 破滅的競爭(cut-throat competition)이 있을 수 있다는 것, ④ 構造基準에 의하면, 共謀나 協定은 違法이지만, 그러나 이를테면 製品規格과 販賣條件을 標準化하는 協定은 도리어 競爭促進의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⑤ 構造基準과는 矛盾되는 或種의 競爭制

(82) J.S. Bain,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after Thirty Years, The Impact on Industrial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4, *ditto*, "Price and Production Policies", in H.S. Ellis ed., *Survey of Contemporary Economics*, pp. 129~73.

(83) J. McDonald, *op. cit.*, p. 245.

(84) J. McDonald *op. cit.*, p. 248.

限이나 어느 정도의 市場支配는 Schumpeter가主張하는 것처럼 새로운 製品이나 生産方法의 導入을 容易하게 하는 수도 있다는 것 등이다<sup>(85)</sup>. 그런 까닭에 우리가 反트러스트政策에 의하여 個別企業의 行動範圍가 競爭企業의 行動에 의하여 크게 制限되는 市場構造를 追求하는 것도, 또한 經濟的 資源의 效率的 利用을 目標로 하여, 市場의 構造要因은 그것이 效果的이 아닌 企業成果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考慮하는 것도 다같이 問題로 된다. 그러므로 Mason은 두가지 基準의 어느 쪽도 다른 쪽을 無視할 수는 없고, 이 兩基準은 각각 長點과 短點을 가지므로, 서로 排他的이기보다는 補完的으로 利用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sup>(86)</sup>. 따라서 McDonald는 그를 中間的 立場 또는 二元論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두가지 基準을 補完的으로 利用하는 경우에도, 各各의 基準을 適用하는 경우의 問題點은 殘存하고, 그 어느 쪽에 重點을 두는가도 問題이다. 먼저 構造基準에 關하여 보면, 그것은 成果基準보다도 嚴密性을 가지고, 行政的, 司法的 適用에 보다 容易한 것도 事實이다. 販賣者數와 市場占有率은, 市場의 範圍를 어떻게 定하는가가 問題이긴하나, 大體의인 確認이 可能하다. 그러나 共謀의 有無를 發見하는 것은 通常 困難하고, 充分한 選擇機會의 存在에 必要한 販賣者나 購買者의 數의 決定도 困難한 問題이다. Mason도 指摘하는 바와같이, 必要한 企業의 數는 產業에 따라서 相異하며, 그 數가 充分한가 不充分한가는 그 企業의 市場成果를 考慮하지 않고는 決定될 수 없다. 그러나 市場成果에 의하여, 法廷이 實際로 利用할 수 있는 基準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困難하다. 成果基準의 테스트로서는, 進歩性, 費用—價格關係, 生産能力—產出量關係, 利潤의 水準 및 販賣費등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라도 法廷이 利用하기에는 明確하지 않은 概念들이다.

構造基準과 成果基準의 어느 쪽에 重點을 두어야 하는가는 어느 程度 個人的 價値判斷의 影響을 받는다고 하는것이 Mason의 立場이다. 이와같이 Mason은 두가지 基準을 補完的으로 利用하고, 그 어느 쪽을 重視하는가는 個人的 ایده올로기의 考慮에 依存한다는 立場인데, 이러한 立場은 McDonald가 主張하는 것처럼 科學的, 客觀的 立場은 아니다<sup>(87)</sup>. 트러스트問題에 대하여 正當한 解答이 주어지는 것은 ایده올로기나 哲學이 아니라, 產業組織論의 實證的 研究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原理的 一貫性만을 追求하여 極端的인 政策을 實施하는 것이 여러가지 困難을 隨伴하는 것을 생각하면, 보다 現實的인 方向을 취하려고 하는 Mason의 立場은 有效競爭論을 한층 現實政策에 結付시켰다고 하지 않을

(85) Mason, *op. cit.*, p. 355~57.

(86) Mason, *op. cit.*, p. 366.

(87) J. McDonald, *op. cit.*, p. 231.

수 없다.

## 2) 司法長官委員會의 報告書

우리는 以上에서, 有效競爭의 基準으로서 構造基準이나 成果基準 가운데 하나를 採用하는 것은, 兩基準 모두 競爭原理의 維持라고 하는 共通의 基盤위에 서있기는 하지만, 原理的 및 政策的으로 諸難點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補完的으로 利用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Mason의 立場을 考察하였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立場을 떠나서 合理的인 反獨占政策을 追求하려면, 非有效競爭的인 市場構造 및 市場行動을 排除하여 바람직한 市場成果의 實現을 期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市場構造(行動을 包含)가 基本이 되어야 할 것이다. 事實 最近에 美國이나 日本에서 反트러스트政策을 實施한 歷史를 보더라도, 1945年의 美國의 Alcoa Case<sup>(88)</sup> 以後로 構造基準의 立場을 취하면서 成果基準도 아울러 考慮하려는 傾向이 支配的인 것을 알 수 있다. 勿論 原理的으로 보면, 構造基準도 어떤 意味에서는 成果를 豫想하고 있으며, 成果基準은 前述한 바와 같이 成果에 重點을 두면서 構造의 면도 考慮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히 基本的으로는 構造基準의 立場을 취하면서 成果基準의 諸要素를 加味하여, 具體的인 有效論爭의 基準을 提起한 것으로서 가장 注目되는 것은 1955年에 提出된 美國의 司法長官委員會의 報告書이다.

司法長官委員會는 “獨占과 不公正한 競爭으로부터 美國의 自由企業을 保護하기 위하여, 우리의 法律을 現代化하고 強化할 수 있는 方法을 마련하려는” D. Eisenhower 大統領의 要請으로, “우리의 反트러스트法을 思慮깊고 包括的하게 研究하는것”을 目的으로 하여, 司法長官 Herbert Brownell, Jr. 에 의하여, 1953年 8月 27日에 만들어졌다<sup>(89)</sup>. 이 委員會는 司法省 反트러스트部擔當 司法長官補 S. N. Barnes 와 미시건大學校 教授 S. C. Oppenheim을 委員長으로 하고, 그 밖에 61人의 委員으로 構成되었다. 委員들은 反트러스트 및 그 隣接分野의 專門家로서, 經濟專門家들 中에는 W. Adams, M. A. Adelman, W. Berge, J. M. Clark, C. E. Griffin, A. E. Kahn, S. H. Slichter, G. J. Stigler 등이 包含되었다. 이 報告書는 各分科委員會의 報告를 基礎로 作成한 草案을 2回의 全體會議의 檢討를 거친 뒤 1955年 3月에 司法長官에게 提出된 것이다.

同報告書의 內容은, 去來制限과 ‘獨占하는 것(monopolization)’——이것이 競爭的條件의 不當한 制限을 禁止하는 政策의 두가지 部分이다——에 관한 Sherman法 第1條, 2條의

(88) Alcoa Case에 관하여는 p. 46 參照.

(89)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s National Committee to Study Antitrust Law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5, p. iv.

基本概念(第1章), “競爭條件의 不當한 制限”을 禁止하는 政策의 海外通商에 대한 關係(第2章), 主로 Clayton 法 修正第7條의 合併(mergers)의 問題(第3章), 主로 分配過程에 關係되는 Clayton 法 第2條, 3條(第4章), 特許에 관한 反트러스트問題(第5章), 反트러스트法의 適用除外(第6章), 競爭과 獨占의 經濟的特質(第7章) 및 反트러스트 政策의 機關과 實施의 問題(第8章) 등 全文 8章으로 되어있다<sup>(90)</sup>. 우리는 이 報告書가 美國의 反트러스트政策에 관한 理論的, 實際的 諸問題를 體系的 綜合的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가 關心을 가지고 있는 有效競爭의 基準은 同報告書 第7章 “競爭과 獨占의 經濟的 特質”中 “有效競爭과 關係있는 諸要因의 要約”<sup>(91)</sup>이라는 項目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諸要因은 ① 有效競爭의 販賣者數: 相對的 規模의 問題, ② 進入의 機會, ③ 競爭者의 獨立, ④ 略奪의 排除慣行, ⑤ 產業 또는 市場의 成長率, ⑥ 競爭의 活動에 대한 市場誘因의 性質, ⑦ 製品差別化와 製品同質性, ⑧ 競爭者의 價格에 順應 또는 對應하는 行動, ⑨ 過剩能力 및 ⑩ 價格差別로 되어있다. 다음에 以上의 諸要因과 有效競爭과의 關係에 관한 司法長官委員會의 見解를 要約해 보자.

#### 1) 有效競爭의 販賣者의 數: 相對的 規模의 問題

經濟學的 意味에서 有效競爭이 存在하기 위해서는 어떤 企業도 獨占力을 가지지 않도록 市場에 獨立的인 競爭關係가 存在해야 한다. 그 意味는 어떤 企業이라도 長期間에 걸쳐서 높은 價格과 적은 產出量으로 任意의 水準의 利潤을 追求하거나, 또는 進入을 阻害하거나 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有效競爭에 必要한 企業數와 相對的 規模는 產業에 따라서 相異하므로 一律的으로 斷定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販賣者의 數나 規模는 具體的인 市場에 關聯되어서 비로소 意味를 가진다. 이 경우 有效競爭을 위해서는 一般的으로는 販賣者數와 아울러 그 相對的 規模도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에 留意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脆弱하고 非效率的인 企業의 存在는 數의으로는 많을지라도 他企業과의 사이에 競爭關係의 成立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強力한 企業의 出現은, 그 市場의 有效競爭과의 關聯에 있어서, 또는 너무 脆弱한 非效率的 企業과의 關聯에 있어서 綿密하게 檢討되어야 할 要因이다. 그러나 強力한 企業의 出現만 가지고서는 有效競爭의 存在를 否認할 수는 없다.

만일 販賣者가 少數이면, 非個人的 市場關係보다도 相互意識이 생기기 때문에, 共謀

(90) Report, *op. cit.*, pp. ix~xiii, 및 pp. 3~4.

(91) Report., pp. 324~36.

가 成立될 可能性이 增大한다. 販賣者數가 少數인 市場에서는 실사 共謀가 없더라도 事實上 有效競爭이 아닐 可能性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產業은 慎重히 다루어질 必要가 있다.

### (2) 進入의 機會

새로운 競爭者가 自由로 進入하는 機會를 가지는 것은 長期的으로 有效競爭이 存在하기 위한 基本的 條件이다. 새로운 企業이 어떤 市場이나 產業에, 또는 그 生産, 販賣의 어떤 段階에 進入하고, 現存企業이 이로부터 退去하는 것은, 市場이 그 經濟的 成果를 達成케 하기 위한 基本的 메카니즘이다. 競爭의 分野에 進入하는 費用은 龍大해서는 안된다. 그 意味는, 資本을 利用하려는 現在의 條件에서, 現存企業이 價格을 競爭의 水準보다도 어느 程度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新企業이나 現在의 限界企業이 그 分野에 侵入하기가 有益하고 實行可能하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新企業에 대한 費用條件이 적어도 처음 段階를 經過한 後에 現存企業의 費用條件보다도 過度하게 높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勿論 많은 경우에 있어서 新企業은 가장 進步的인 技術을 採用할 수 있는 費用上의 有利한 立場에서 出發하는 것이 事實이다.

실사 多數의 競爭者가 存在하고 活潑한 競爭이 행하여지고 있더라도, 大膽하고도 效果的인 革新을 排除하지 않기 위해서는 相當한 進入機會의 存在가 必要하다. 새로 進入한 企業이 모두 存續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企業은 價格形成이나 企業活動에 貢獻한 뒤에, 競爭過程을 통하여 衰退하기도 한다. 그러나 有效競爭에 必要한 數의 販賣者를 確保하고, 市場이 차차 獨占的 安定狀態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程度로 進入의 機會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競爭者를 排除하는 것은 그 自體만으로 가장 重要한 競爭의 妨害로 되며, 그렇게 하는 行爲는 그 產業에 既存하는 獨占力과 關係를 가지는 것이 普通이다.

### (3) 競爭者의 獨立

어떤 產業에 屬하고 있는 企業들이 眞正한 獨立性을 保有하고, 자기의 個別的 利益을 追求하는 것은 有效競爭의 基本的 條件이다. 多數의 販賣者가 있는 產業에서는 상당히 確固한 協定이 있어야만 協調的 行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販賣者의 數가 매우 限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協調的 行動은 巧妙하고, 非公式的으로 되며, 發見하기에 困難한 경우가 있다. 모든 產業에서, 販賣者가 自己의 競爭의 政策을 決定하는 경우에 競爭相對方의 反應을 考慮하고자 하는 것은 普通이고, 販賣者가 少數인 경우에는 이러한 反應을 豫測하기가 보다 容易하다. 販賣者의 數가 적은 것은 政策上의 相互依存關係를 가져

오거나, 競爭者의 獨立을 阻害한다고 斷定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可能性은 있는 것이다.

#### (4) 略奪의 排除慣行

略奪的 排除行爲가 행하여지는 結果로 그 效率性과는 關係없이 競爭者가 排除되거나, 매우 不利한 立場에 놓여져서는 안된다. 通常의 경우, 이러한 意味의 略奪的競爭이 實際問題로서 일어나는 것은, 이미 相當한 市場支配力이 存在하거나, 競爭者를 破壞, 強壓하기 위하여 많은 資産을 쓰려고 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略奪的 排除慣行은 獨占 또는 獨占하려는 意圖의 表現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略奪의 또는 破滅的(cut-throat) 慣行이 市場力의 濫用보다도 競爭自體의 壓力으로 나오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事實에 立脚하여, ① 낮은 價格, 其他의 略奪의 行爲로 보이는 行爲가 競爭者를 破滅 또는 強壓하려는 目的을 가진 一時的인 것인가, 또는 ② 競爭에 對應하거나, 낮은 費用으로 高水準의 生産을 하여 利潤을 增加시키거나, 또는 그 밖의 競爭의 目的을 위한 것인가등을 알아 보아야 한다. 勿論 이렇게 하는것은 略奪의 行爲를 正當化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行爲의 存在를 確認하기 위한 것이다.

#### (5) 産業 또는 市場의 成長率

어떤 産業의 成長速度는 그 産業의 競爭狀態를 나타내는 直接的 指標는 아니다. 實際로 衰退하고 있는 産業이라도 有效競爭의 일 수가 있다. 그러나 成長率은 다른 要因, 특히 企業數와 進入機會의 意味를 判斷하는데 重要한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市場成長率은 企業數와 相對的 規模에 影響을 미치고, 進入障壁의 有效性을 變化시킨다. 期待되는 産業의 成長率은 既存企業의 態도와 豫想에 影響을 미치고, 外部企業을 그 産業으로 誘引하고, 極端的인 進入制限을 하지 않더라도 市場支配力을 維持할 可能性을 增大시킨다. 急速하게 成長하는 새로운 産業에서는 新市場의 開拓과 高度의 技術進歩가 있기 때문에, 가장 有利한 政策이 무엇인가를 確認하기가 困難하다. 新企業의 進入이 있으면, 이러한 政策은 더욱 決定되기 어렵고, 諸企業은 競爭者에게 損失을 주지 않고 成長할 수 있다. 一定數의 企業은, 急速하게 成長하는 産業에 있어서보다도 安定的인 産業에서 보다 容易하게 確固한 地位를 維持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競爭의 活動을 하도록 促求되지 않으면, 企業은 競爭者의 進入을 阻害할 뿐만 아니라, 費用減縮과 産業의 擴大를 가져오는 新技術의 採用을 더디게 한다.

#### (6) 競爭의 活動에 대한 市場誘因의 性質

競爭은 市場이 어떻게 組織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또는 利益에 대한 期

待나 損失의 危險性과 같은 誘因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有效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다. 市場誘因의 強弱을 判斷하기 위해서는 競爭의行動과 期待되는 反應과의 사이에 時間的 格差(그 自體는 有效競爭이 있는가 없는가의 特質은 아니지만)가 檢討되어야 한다.

一般的으로 組織된 市場以外的 市場에서는, 적어도 얼마동안 競爭行動을 開始하는 企業의 去來量이 增加되어야 有效競爭의으로 된다. 즉 어떤 誘因에 대한 顧客의 反應이 相對便 企業의 反應보다도 迅速하고, 그 때문에 어떤 期間동안 競爭의 行動에 대한 有利한 期間이 있어야 한다. 企業이 革新, 價格變更 또는 其他의 直接的 行動에 대한 誘因을 가지게 되는 것은, 革新者의 行動이 相對便 企業의 行動에 의하여 當場에 對應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 동안 利益을 얻을 수 있다는 期待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競爭의 行動이 곧 相殺되지 않는 경우, 또는 敵對的 反應이 不確實한 경우에 다른 條件의 變化가 없는 限, 有效競爭을 가져온다고 생각된다. 換言하면 敵對企業이 곧 反應할 것이라는 豫想은 競爭의 行動을 抑制한다.

價格硬直性만으로는 有效獨占이나 有效競爭이 있다고 斷定될 수 없다. 獨占은 自己의 利益을 위하여 價格을 變更하고, 競爭의 產業에도 얼마 동안 安定的인 需要와 供給의 條件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價格變更이나 價格硬直性を 評價하려면, 그 市場狀態(market settings)를 考慮하여야 한다.

#### (7) 製品差別化와 製品同質性

만일 다른 條件이 같다면, 敵對企業의 製品이 보다 더 同質的일수록, 購買者들은 보다 容易하게 어떤 競爭者의 製品으로부터 他 競爭者의 製品으로 移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市場이 넓을수록 그 市場의 競爭의 程度는 보다 커진다.

製品差別化의 影響은 市場狀態(market setting)에 關聯된다. 極端的인 製品差別化는, 어떤 製品에 대한 需要를 다른 競爭的 製品의 需要로부터 隔離하는 것에 의하여, 實質的으로 獨占을 가져온다. 그러나 比較的 緩漫한 製品差別化는, 다른 點에서 有效競爭의 인 市場에서는 價格競爭이나 品質競爭등을 包含하는 競爭을 促進하는 要因으로 된다. 그러므로 製品差別化가 有效競爭에 미치는 影響은 그 市場의 狀態와, 보다 中心的인 役割을 擔當하는 다른 有效競爭의 諸特質에 비추어서 判斷되어야 하는 것이다.

#### (8) 敵對企業의 價格에 順應 또는 對應하는 行動

競爭者들이 다른 競爭者가 提供하는 優越的 誘因에 順應 또는 對應하는 行動은 有效競爭에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販賣者가 그의 競爭者의 價格에 順應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은, 市場構造自體를 問題로 삼지 않는다면, *reductio ad absurdum* 이다.

그러나 또한 有效競爭에는 자기의 價格을 競爭相對方의 價格以下로 떨어뜨리는 自由도 있다. 그러므로 現存價格에 順應은 하지만, 그 以下の 引下는 안된다는 硬直의 要求는, 需要의 下落이나, 費用의 減縮이 있을 경우에 有效競爭의 價格下落이 不可能함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有效競爭은 競爭者의 價格에 順應하는 것이나, 또는 그 以下로 引下하는 것과 矛盾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短期間의 價格一律性은 販賣者들의 費用이 크게 相異하더라도 重要的 意味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需要와 供給이 變化하는 數期間에 걸쳐서 硬直의인 價格一律性이 있거나, 企業이 自己의 利益이 되더라도 價格을 騰落시킬 수가 없거나 할 적에는 有效競爭과 맞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價格順應이나 價格引下를 規制하는 것은, 그것이 公的인 것이거나 私的인 것이거나 有效競爭에 反하는 것이 된다.

#### (9) 過剩能力

過剩能力이란 定義하기가 困難한 用語이고, 確認하기는 보다 어렵다. 이 말은 普通 競爭의 產業에서 投資분에 의하여 생기는 生産能力의 過剩, 또는 一般的 不況期에 利用되지 않고 있는 生産能力을 나타내는데 쓰여지고 있다. 이 두가지 用法은 衰退產業의 過剩能力과는 區別되어야 한다. 一般의 好景氣에 現行費用으로 利用可能한 過剩生産能力이 存在하는 것은 有效獨占의 結果이기도 하고, 有效競爭의 結果로도 된다. 만일 어떤 產業의 企業들이 高價格과 生産制限에 의하여 보다 많은 利益을 追求하는 政策을 쓰는 傾向에 있다면, 그 產業은 結果적으로 慢性的인 過剩能力을 가지게 된다. 正常費用으로 利用可能한 過剩能力을 買收하여 破壞하는 企業의 行動은, 獨占하려는 意圖의 強力한 表示로 볼 수 있다. 이에 反하여 可變的인 適當量의 過剩能力은, 擴大의 結果로서, 또는 競爭의 產業의 需要의 增減에 따라서, 또는 自己의 市場占有率을 增大시키려는 生産者들의 競爭의 努力에 附隨되어 自然的으로 자주 發生하는 傾向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만일 다른 競爭要因이 存在하면, 競爭의 有效性を 促進시킨다. 그것은 平均費用을 보다 올리지 않고서, 또는 보다 낮은 平均費用에서, 生産을 擴大하는 것을 可能케 한다. 그리고 經濟가 效率의 生産能力을 高利潤으로 完全利用하는 狀態에 接近함에 따라서, 產業은 高水準의 需要와 利潤에 맞추어서 擴大될 수는 없으므로 競爭의 市場의 正常的 反應을 阻害하는 制限의 措置가 取해질 可能性이 생긴다.

#### (10) 價格差別

價格差別은 언제나 獨占的 要因이 存在하는 證據라고 생각하는 것은 誤解이다. 完全 競爭에서 價格差別이 없다고 해서, 價格差別은 獨占的 또는 反競爭的이라고 推測하는 것은 公共政策의 目標로서 完全競爭을 暗默的으로 容認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有效競爭에 있어서도 價格이 一律적으로 되거나, 그 生産費에 接近하려는 相當한 壓力이 存在하여, 企業이 製品과 生産方法의 革新에 의하여 長期的으로 充分한 利潤을 維持할 수 있는 潜在的 誘因이 存在해야 한다. 企業家は 利潤이 높은 市場을 向하여 不斷한 努力을 하고, 競爭에 의하여 市場間의 利潤의 格差가 平準化되어야 한다.

司法長官委員會는 세가지 價格差別을 들고 있다. 즉 市場을 分割해서 各市場에서 極大利潤을 얻으려는 獨占者의 價格差別, 競爭者를 排除하기 위하여 또는 競爭者를 自己의 政策에 따르게 하기 위하여 一時的으로 行하는 略奪的 價格差別, 또는 競爭에 부딪치는 製品에는 낮은 價格을 메기고, 競爭的이 아닌 製品에는 높은 價格을 維持시키는 보다 緩漫한 形態의 價格差別을 들고 있다. 經濟學에서 보통 論하고 있는 前二者가 競爭促進的이 아닌은 明白하다. 그러나 마지막의 異品種間의 價格差別은 司法長官委員會가 새로이 問題로 삼고 있는 概念이다. 그것은 特許獨占과 關係가 있고, 多製品企業(multiproduct firm)이 競爭的市場의 競爭을 促進하는 效果를 가진다. 그러므로 價格差別은 企業의 市場支配力과 關聯은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 有效競爭이 存在하는 充分條件은 아니다.

勿論 價格差別이 持續的인 경우에는, 그것은 價格形成에 共謀가 存在하거나, 基本的인 市場의 不完全性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上述한 바와같이 競爭促進的인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價格差別은 어떤 市場의 有效競爭을 判斷하는데 다른 要因과 함께 考察되어야 하는 重要な 要因이다.

以上の 10 個의 要因은 司法長官委員會가 有效競爭의 經濟的 側面을 概括하는 보다 重要的 要因이라고 指摘한 것들이다. 그것은 有效競爭을 判斷하는데 利用될 수 있는 상당히 合理的이고 精密한 情報을 提供하는 것이다. 그리고 同報告書는 그중에서 特히 처음 3 項目이 가장 一般的인 것임을 指摘하고 있고, 一部 委員들은 그것들이 보다 一般的일뿐 아니라,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重要하다<sup>(92)</sup>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以上の 考察에 의하면 同委員會의 基本的立場은 販賣者의 數와 規模, 進入機會 및 競爭者의 獨立等의 構造的 要因에 有效競爭의 基盤을 두면서, 이것에 덧붙여서 그밖의 要因을 아울러 考慮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2) Report., p. 325.

勿論 이러한 委員會의 立場에 대해서는 많은 論者が 批判을 加하고 있다. 이를테면 Stigler는 同報告書가 意味있고 實行 가능한 有效性의 基準을 展開하는데 何等의 進歩를 하고 있지 않다고 斷定하고, “同報告書에서 든 有效競爭을 確認하는 10個의 要因중에서, 充分한 數, 進入의 自由, 共謀의 不存在 및 持續的 價格差別의 不在等 主要 要因은 다만 日常用語로 바뀌달한 完全競爭論에 不過한 것이고, 그밖의 要因은 漠然한 獨占의 徵候를 通常의 競爭의 理論으로 論한 것이거나(이를테면 過剩能力), 또는 이 理論에 의하여 說明 되어야할 市場行動에 관한 假說이다”<sup>(93)</sup>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는 有效競爭의 客觀的 基準은 없다. 그리고 選擇된 基準들도 嚴格하고 抽象的인 完全競爭의 基準을 直覺的으로 妥當하게 修正을 加한 것에 不過하다”<sup>(94)</sup>는 委員會의 少數意見에 贊成하고 있다<sup>(95)</sup>.

이와같은 異論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司法長官委員會의 報告書는 近年의 美國에 있어서의 最大公約數的 有效競爭基準을 代表하는 것이고, 反트러스트政策의 實際運用上的 基本的인 方向을 나타낸 것이다. 그 有效競爭의 內容은 競爭의 有效성과 關聯있는 重要な 要因을 거의 網羅하고, 그것들이 競爭의 또는 非競爭의으로 作用하는 경우를 다른 要因들과의 關聯에서 詳細하게 考察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一般的으로 構造要因을 重視해야 함을 強調한 點에 있어서, 構造基準에 重點을 두고 成果基準도 아울러 考慮하려는 有效競爭基準의 深化·發展의 方向을 보이는 것이다.

### 3. 産業組織論의 發展

#### 1) 産業組織論의 形成

産業組織論은, ① 市場構造(market structure)의 型, 販賣者와 購買者의 市場行動(market conduct) 및 企業의 市場成果(market performance)를 研究하고, ② 이를테면 어느 程度로 市場成果가 市場構造나 市場行動으로 說明 또는 豫測되고, 市場行動이 市場構造에 의하여 說明 또는 豫測되는가를 判斷하기 위하여, 構造, 行動 및 成果와의 사이의 關聯(associations)을 追求하고, ③ 그 結果를 利用하여 獨占과 競爭에 影響을 주는 오늘날의 公共政策을 評價·批判 乃至 推進하기를 企圖하는 것이다. 産業組織論이 以上과 같은 趣意를 가지는 것은, 그것에 관한 典型的인 著述인 Bain의 *Industrial Organization*의 構成이나<sup>(96)</sup>, 同

(93), (95) G. J. Stigler,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s Committee on Antitrust Policy—Discu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No. 2, May 1956, p. 505.

(94) *Report, op. cit.*, 1955, p. 339.

(96) Joe S. Bain, *Industrial Organization*, 2nd ed., 1968, pp. xi~xix.

書 第1版의 序文<sup>(97)</sup>을 보더라도 容易하게 確認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意味의 產業組織論은 Bain 에 의하면 “價格理論을 아버지로 하고, 트러스 트問題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다.”<sup>(98)</sup> 보다 具體的으로 表現하자면, 그것은 1933년에 刊行된 Chamberlin의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과 1930年代 後半부터 行하여진 產業과 市場에 關한 實證的 研究의 結果로 하나의 새로운 經濟學分野로서 確固한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Chamberlin 以前에 있어서도 19世紀末頃に Alfred Marshall과, 1920年代에는 企業理論과 完全競爭的 市場理論의 發展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工場과 企業의 規模의 經濟性에 關한 E. A. G. Robinson<sup>(99)</sup>이나, P. S. Florence<sup>(100)</sup>등의 重要한 業績이 있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리고 Chamberlin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Joan Robinson<sup>(101)</sup>은 需要 獨占과 價格差別의 分析을 통하여 市場理論을 精密化하였다. 이와같이 그 동안에 重要한 理論的 業績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產業組織論의 體系的 展開가 可能하도록 價格理論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온 것은 Chamberlin 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는 抽象的인 價格理論과 實證的인 研究를 融合하는 것에 의하여, 既存하는 建物を 補修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어느 程度까지 再建하기에 成功하였던 것이다.

產業組織論의 最初의 理論의 起源(primary theoretical origin)은 Chamberlin의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에서 찾아진다. 그것은 Bain도 指摘하고 있는 바와같이 첫째로 企業經濟가 크게 相異한 市場構造를 가지는 여러 產業으로 成立되고, 이러한 構造上의 相異로 市場行動과 成果도 크게 달라진다는 理論構成(theoretical construct)을 처음으로 明白히 展開하고, 同時に 둘째로 市場構造의 簡單한 分類에 의하여 이 理論構成의 適用을 試圖하였던 것이다<sup>(102)</sup>.

相當히 滿足할만한 市場分類, 將來의 理論化와 實證的 研究의 方向을 提示한 寡占理論, 理論構成과 그 適用의 型, 市場成果로서 價格, 生產費 및 產出量과 아울러 販賣費와 製品差別化의 認定 및 不完全共謀의 寡占到 있어서의 市場行動에 關한 몇가지 假說등으로 그

(97) J.S. Bain, *ibid.*, p. viii.

(98) Joe. S. Bain,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After Thirty Years, The Impact on Industrial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No. 3, May 1964, p. 28.

(99) E.A.G. Robinson, “The problem of Management and the Size of Firms,” *Economic Journal*, June 1934.

(100) P.S. Florence, “The Problem of Management and the Size of Firms: A Reply,” *Economic Journal*, Dec. 1934.

(101) Joan Robinson,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1933.

(102) J. S. Bain,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After Thirty Years, The Impact on Industrial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No. 3, May 1964, p. 29.

의 著書는 産業組織論의 發展에 重要한 影響을 미쳤다.

産業組織論의 理論的 起源은 以上과 같이 Chamberlin 에서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오늘날의 Bain<sup>(103)</sup>이나 Caves<sup>(104)</sup>에 이르는 동안 産業組織論의 發展에 커다란 寄與를 한 經濟學者로서 E. S. Mason 이 있다. 그는 理論面에서도 産業組織論을 發展시켰지만, 오히려 實踐的인 公共政策과의 關聯에 있어서 市場構造와 成果에 관한 假說을 테스트함으로써 産業組織政策에 有效한 理論的 接近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産業組織論의 進歩는 1930年代부터 시작된 Mason의 先驅의 役割에도 크게 힘입고 있다. Markham 이 말하는바에 따르면 Mason은 産業組織論을 出生케 한 產婆의 役割을 했다고 할 수 있다<sup>(105)</sup>. 이렇게 볼 때 産業組織論은 Chamberlin 으로부터 Mason 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Bain 과 Caves의 線을 따라서 展開되었다고 볼 수 있다. Mason, Bain 및 Caves가 서로 學問的으로 緊密한 關係를 가졌음은 Bain이 그의 著書 *Industrial Organization*의 序文에서 1930年代에 産業組織論을 자기에게 紹介한 것은 Mason이라는 것과, Caves는 그의 著書에 대하여 有用한 批判的 助力을 했음을 指摘한 것에서도 推測할 수 있다<sup>(106)</sup>.

그러면 上述한 사람들에 의하여 産業組織論이 形成되기에 이른 歷史的 背景은 무엇일까? 그것은 1890年以後 美國에서 實施되어온 反트러스트政策의 經驗과 그 政策基準으로서의 有效競爭論의 展開였다고 볼 수 있다. 産業組織論은 元來 産業組織을 理論的으로 研究하여 公共政策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인 만큼, 國民所得의 約 80%를 차지하는 産業分野<sup>(107)</sup>에 關聯되는 反트러스트政策의 기나긴 歷史가 그 背景으로 되는 것은 當然하다고 할 것이다. 産業組織論의 理論構成을 形成하는 세가지 中心概念인 市場構造, 企業行動 및 市場成果는 元來 反트러스트政策의 實施過程에서 具體的 意味가 自覺된 것이다. 이를테면 Sherman法 第2條의 解釋上, 獨占하는 것(monopolization)은 獨占(monopoly)과 다르다고 보는 立場은 市場構造보다도 市場行動에 重點을 두는 것이었다. 이것은 獨

(103) Joe S. Bain, *Industrial Organization*, 2nd ed., 1968.

(104) R. Caves, *American Industry: Structure, Conduct, Performance*, 2nd ed., 1967. 以上の 兩者는 오늘날 産業組織論에 관한 代表的 著述로 되어있다.

(105) J. W. Markham;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after Thirty Years—Discu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No. 3, May 1964, p. 53.

(106) J. S. Bain, *Industrial Organization*, p.x.

(107) Markham은 美國에서는 國民所得의 約 80%를 차지하는 産業分野의 公共政策은 主로 反트러스트法에 關聯된다고 하였다. J. W. Markham, "Workable Competition and Operable Antitrust," J.W. Markham ed., *The American Economy*, 1963, p. 80. 또한 Kaysen과 Turner는 反트러스트法の의 適用을 받지않는 産業部門의 國民所得이 全國民所得의 18.4%에 該當한다는 結論을 내고 있다. C. Kaysen and D.F. Turner, *Antitrust Policy, An Economic and Legal Analysis*, 1965, p. 42.

占의 市場構造는 違法이 아니고, 獨占의 行動이 違法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1920年의 U.S. Steel Case에서 “이 法律은, 單純한 規模나 行使되지 않은 支配力의 存在는 違法으로 하지 않는다”<sup>(108)</sup>고 指摘된 것은 그 代表的 例이다.

그런데 1945年에 聯邦最高裁判所는 Alcoa Case에서 高度의 販賣者集中이 Sherman 法 第2條違反이라는 見解를 취하였다. 즉 Alcoa가 美國의 第1次알루미늄의 90%를 支配한 것은 “獨占을 構成하기에 充分하다. 60% 또는 64%가 充分한가 그렇지 않는가는 確實하지 않다. 그리고 33%는 確實히 獨占이 아님”<sup>(109)</sup>을 示唆하였다. 이것이 同法 第2條를 違反하는 販賣者集中의 程度를 判定하기 위한 正當한 基準인가 아닌가는 姑捨하고, 이것은 市場 行動基準에서 市場構造基準으로 視點이 바뀐 것을 意味함은 分明하다. 또한 1947年의 National Lead Case에서는 National Lead Co.가 構造基準에서는 企業의 數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行動基準에서는 共謀의 去來制限이 있기 때문에, 構造로보나 行動으로 보나, 有效競爭의 條件을 充足하지 못하지만, 價格下落, 販賣量增加傾向등 有效한 企業成果를 考慮하여 企業數의 增加를 要求하지는 않았다<sup>(110)</sup>. 이와같이 構造, 行動 및 成果의 3概念은 反트러스트政策의 實施過程에서 그것이 意識됨에 따라서 產業組織論形成의 背景으로 되었다고 推測된다.

다음에 注目되는 것은 有效競爭論과 產業組織論과의 關係이다. 市場構造(行動을 包含한다)나 企業成果의 概念이 有效競爭論에서 構造基準과 成果基準으로 各論者에 의하여 詳細한 內容이 주어지고, 整理되었음은 本稿의 III에서 考察된 바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產業組織論의 形成에 이바지한 Mason이나 Bain이 바로 有效競爭論者임을 알고 있다. 특히 Bain은 有效競爭基準의 展開와 發展에 參加하면서 詳細한 成果基準을 形成하고, 그 뒤로 近年에 이것을 實證의으로 發展시켜서 세가지 基本概念에 依據하는 產業組織論의 體系를 完成하고 있다. 그러므로 現在의 產業組織論은 有效競爭論과 不可分의 것이며 그것의 發展과 並行하여 그 體系를 確立한 새로운 經濟學의 一分野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產業組織論의 大要

우리는 앞에서 有效競爭論에는 構造基準과 成果基準의 두가지 立場이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오늘날의 產業組織論은 有效競爭論의 構造의 要因에서 行動要因을 分離하고, 市場

(108) U.S. v. U.S. Steel Corp., 251 U.S. 417(1920), reprinted in I.M. Stelzer, *Selected Antitrust Cases*, 3rd ed., 1966, p. 14.

(109) U.S. v. Aluminium Co. of America, 148 F. 2d 416(1945), reprinted in I.M. Stelzer, *Selected Antitrust Cases*, 3rd ed., 1966, p. 19.

(110) U.S. v. National Lead Co. et al., 63 F. Supp. 513(1945), 332 U.S. 319(1947), reprinted in I.M. Stelzer, *Selected Antitrust Cases*, 3rd ed., 1966, pp. 297~303.

構造, 市場行動 및 市場成果라는 세가지 概念을 確立하여, 이러한 概念들에 依據하면서 그들 相互間의 關聯을 追求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良好한 市場成果를 實現하기 위한 公共政策에 理論的, 實際的 基礎를 提供하는 것이라는 것도 言及하였다. 여기서는 產業組織論의 體系를 完成한 Bain의 見解를 中心으로 하고, 아울러 Caves의 主張도 考慮하면서 產業組織論의 內容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3 概念을 產業組織論에서는 어떻게 把握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자.

市場構造는 市場의 組織上的 特質, 具體的으로는 販賣者와 販賣者, 購買者와 購買者, 販賣者와 購買者 및 既存企業과 潛在的 新企業間의 關係를 決定하는 市場組織上的 特質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市場에 있어서의 競爭과 價格設定등 企業의 市場行動에 戰略的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가장 注目되는 構造要因으로서는, Bain에 의하면, ① 販賣者集中度——이것은 市場에 있어서의 販賣者의 數와 規模의 分布로 規定지어진다. ② 購買者集中度, ③ 製品差別化의 程度 및 ④ 進入障壁——이것은 一般的으로 既存企業이 潛在的 進入者에 대하여 가지는 優越한 地位로 決定된다——등이 있고<sup>(111)</sup> Caves에 의하면 ① 販賣者集中, ② 生産物差別化 및 ③ 新企業의 進入障壁以外에, ④ 市場需要의 增加率, ⑤ 市場需要의 價格彈性 및 ⑥ 短期的 固定費用과 可變費用과의 比率를 들고 있다<sup>(112)</sup>. 그러나 Caves도 나중의 세가지 要因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미치는 影響은 少數의 產業에 限한다는 것과, 그 影響이 어느 程度인가를 測定하기가 困難하다는 것등의 理由로 重要視하지 않고 있으므로<sup>(113)</sup>, 構造要因으로서 가장 重要的 것은, 販賣者集中, 製品差別化 및 進入障壁으로 볼 수 있다. 集中의 問題는 從前부터 經濟學에서 다루어온 問題이고, 生産物差別化는 Chamberlin에 의하여 具體的으로 提起된 條件인데, 進入障壁은 最近 Sylos-Labini,<sup>(114)</sup> Bain<sup>(115)</sup> 및 Modigliani<sup>(116)</sup> 등 一連의 學者들에 의하여 理論的으로 研究되었고, 寡占價格이 어떻게 形成되는가를 생각하려면 不可缺한 條件으로서 注目되고 있는 點에서 現代的인 意味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司法長官委員會도 이것이 있는 有效競爭은 期待할 수 없다고 보고, 進入條件을 長期的인 有效競爭의 基本的 前提로 삼고 있다<sup>(117)</sup>.

(111) Joe. S. Bain, *Industrial Organization*, p. 7.

(112) R. Caves, *American Industry: Structure, Conduct, Performance*, 2nd ed., 1967, p. 16.

(113) R. Caves, *Ibid.*, p. 36.

(114) Paolo Sylos-Labini, *Oligopoly and Technical Progress*, 1962, trans. from *Oligopolio e progresso-tecnico*, 1957.

(115) Joe. S. Bain, *Barriers to New Competition*, 1956.

(116) Franco Modigliani, "New Development on the Oligopoly Fro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une 1958, pp. 215~32.

(117)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s National Committee to Study the Antitrust Laws*, 1957, p. 326.

市場構造를 이보다도 넓게 定義하여, 그 市場에 供給하는 企業行動에 影響을 끼치는 經濟的으로 重要的 市場의 特質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心理的, 技術的, 地理的, 또는 制度的인 모든 客觀的 環境을 包含하는 것이 된다. 만일 이러한 定義를 採用한다면, 構造의 概念이 매우 曖昧하게 되고, 構造가 行動에 주는 影響을 市場間에 比較하거나 一般화하기가 困難하게 되므로 產業組織論에서는 이와같은 概念을 採用하지도 않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하더라도 有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市場行動은 企業이 市場에 適應하기 위하여 行하는 行動의 形態이다. 重要的 市場行動의 要因으로 Bain 이 들고 있는 것은 다음의 네개이다<sup>(118)</sup>. ① 企業 또는 企業群이 價格과 產出量을 決定할 때에 가지는 目標과 그 方法. 前者는 集團利潤의 極大化인가, 個別利潤의 極大化인가, 또는 慣例的인 公正한 利潤마진인가 이고, 後者는 價格은 費用에 어떤 마진을 加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方法으로 決定되는가, 또는 單一價格인가, 아니면 差別價格인가 등이다. ② 企業 또는 企業集團의 製品政策. 製品의 改良이나 變化는 市場政策의 一部分인가, 또 그렇다면 그와같은 製品政策의 特質과 方向은 어떤 것인가? ③ 企業 또는 企業集團의 販賣促進政策. ④ 競爭的 販賣者들의 價格政策, 製品政策 및 販賣促進政策의 調整方法. 이를테면, 1. 共通의 價格이나 製品, 또는 販賣促進費를 위하여 明示的 共謀나 協定이 있는가? 2. 價格先導制와 같은 暗默의 協定이 있는가? 3. 秘密의 價格引下 등으로 共謀的 協定(明示的인 것이든 暗默的인 것이든)의 不履行은 없는가? 4. 競爭者의 反應을 豫想한다는 意味에서 價格決定등의 相互依存性은 없는가? 5. 競爭相對便의 反應을 考慮하지 않고 完全히 獨立의 行動을 하는가? 6. 既存의 競爭相對便이나 潛在의 進入者에 대하여 略奪的이거나 排除的인 戰略이 行使되는가? 등이 이에 包含된다. 만일 市場行動을 製品市場에 대한 企業의 政策과 競爭者의 움직임에 대한 企業의 政策으로 二分한다면, 上記의 要因中에서 ①, ② 및 ③은 前者에, 마지막 ④는 後者에 屬한다.

Caves 는 寡占市場의 企業의 行動을 中心으로 하여 市場行動을, ① 價格政策, ② 製品政策 및 ③ 強壓의 行動(coercive conduct)의 세가지로 分類하였다<sup>(119)</sup>. 그에 의하면 寡占企業이 價格을 設定하는 行動(이것에는 集中된 產業內의 販賣者가 그 企業의 內部費用이나 豫想되는 競爭者의 反應과의 關聯에 있어서 價格을 어떻게 決定하느냐는 問題가 包含된다) 및 寡占企業이 價格을 調整하는(coordinate) 行動(이것에는 販賣者間의 協定, 價格先導制 및 暗默的 共謀가 包含된다)이 價格政策의 內容으로 된다. 다음으로 製品의 品質

(118) Joe S. Bain, *Industrial Organization*, 2nd ed., 1967, pp. 9~10.

(119) R. Caves, *op. cit.*, pp. 37~54.



이나 販賣에 關한 行動과 이러한 行動을 販賣者들이 調整하는 行動은 製品政策에 屬한다. 上述한 價格과 製品에 關한 企業의 行動은 市場構造의 影響을 받는 것이고, 거꾸로 市場構造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에 反하여 企業이 다른 競爭者를 業界로부터 驅逐하여, 集中을 增大하는 것에 의하여 市場構造를 意識적으로 變更하려고 企圖하는 수가 있다. 略奪的 價格引下(predatory price-cutting)라든가 壓搾操作(squeeze operation)은 그 主된 것들이다. 強壓的 行動이란 이러한 企業의 行動을 말한다.

Bain 과 Caves 의 市場行動의 分類를 比較하면, Bain 은 個別企業의 價格—產出量政策(price-output policy)만을 價格政策으로 보았는데, Caves 는 企業間의 價格調整行動도 그것에 包含시켰다는 것, 또 Bain 은 製品政策을 製品의 品質改良行動으로 보았는데, Caves는 製品差別化의 한 方法인 販賣政策도 製品政策에 넣고 있는 등 分類形式上의 相異는 있으나 全體的인 市場行動의 內容은 大同小異하다고 생각된다.

市場成果란 企業이 그 行動에 의하여 達成하는 價格, 產出量, 生産 및 販賣費用 및 製品의 디자인 등에 關한 最終的 結果이다. 이것들은 製品의 販賣者로서 企業이 그 製品의 有效需要에 어떻게 適應했는가를 보이는 것이다. 行動은 이를테면 販賣者가 價格을 協定에 의하여 決定하였는가, 또는 獨自的 行動에 의하여 決定하였는가에 關한 것이고, 成果는 그것이 어떤 方法으로 達成되었는가는 問題로 하지 않고, 生産費를 넘는 價格의 마진은 얼마인가, 또는 產出量은 超過利潤을 얻기 위하여 制限되었는가등을 問題로 하는 것과 같다.

以上과 같은 意味의 市場成果의 主要한 側面으로서 Bain 이 들고 있는 것은 다음의 6項目이다. ① 工場과 企業의 規模나 過剩生産能力에 의하여 技術적으로 影響을 받는 相對的인(가장 效率的인 規模에 比較된) 生産의 效率性, ② 長期限界費用 및 長期平均費用(이것은 普通 長期限界費用과 같다)에 對한 販賣價格의 높이 및 그 結果로서의 利潤마진, ③ 價格이 長期限界費用과 같아지는 極大產出量에 對한 産業產出量의 相對的 크기, ④ 生産費에 對한 販賣促進費의 크기, ⑤ 디자인, 品質 및 生産物多樣化를 包含하는 製品의 特質 및 ⑥ 經濟的 및 技術적으로 達成可能的인 進歩率에 比較된 製品 및 生産技術 開發上의 産業의 進歩率<sup>(120)</sup>.

以上の 構造, 行動 및 成果의 3概念은 産業組織論이 첫째로 學問으로서의 體系化와, 둘째로 公共政策의 目的에 貢獻하기 위한 매우 合理的인 分析手段의 구실을 하게 한다. 產

(120) Bain, *op. cit.*, p. 11.

業組織論은 먼저 産業間的 市場成果의 差異가 各産業의 市場構造와 企業行動의 相異에 의존하고, 市場行動은 市場構造의 制約을 받는다는 觀點에 서는 것에 의하여 그 科學的 立場을 確立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方法을 利用함으로써 市場構造와 行動의 相異가 어떻게 成果의 差異를 가져오는가를 追跡할 수 있다. 市場構造와 行動의 型을 分析, 類別하고 이것들과 市場成果와의 關聯을 테스트하는 것은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産業組織論은 이렇게 함으로써 公共政策의 目的을 達成하는 手段으로 利用된다. 經濟的 福祉를 增大시키는 立場에서 보다 滿足스러운 成果를 얻으려면, 어떠한 公共政策의 手段을 採用할 것인가는 重要한 問題이다. 傳統的인 獨占禁止政策의 立場에 서는 産業組織論은 成果의 直接的 規制(이를테면 政府機關에 의한 價格이나 產出量의 直接的인 統制等)는 自由企業經濟를 調整하는 有效한 一般的 手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편, 市場構造나 市場行動의 規制는 보다 實行可能하고 一般的으로 效果的인 政策手段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市場成果를 얻기 위하여 實行可能한 政策手段은 市場構造와 市場行動의 틀을 바람직한 成果를 가져오도록 規制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公共政策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構造, 行動 및 成果와 그들 相互間的 關聯을 研究하여, 成果에 影響을 끼치는 構造나 行動의 政策的인 方向을 알아야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産業組織論의 窮極的인 目標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産業組織論이 政策面에서는 바람직한 市場成果를 얻기 위하여 市場構造와 企業行動을 規制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경우 바람직한 市場成果는 窮極的으로 經濟政策의 一般的 目標(general goals)<sup>(121)</sup>를 基本으로 하고, 이것에 合致하는 것이어야 함은 勿論이다. 우리들은 經濟政策의 一般的 目標로서, 勞動을 包含하는 生産資源의 完全雇傭, 總產出高의 極大化를 가져오는 生産資源의 效率的 利用, 安定된 總雇傭, 높은 進歩率 및 所得의 公正한 分配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바로 市場成果를 判斷하는 大前提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다른 모든 經濟政策이 그런 것처럼, 獨占禁止政策도 이러한 目標의 達成을 全體의으로 追求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資源의 效率的 利用과 進歩의 면에서 크게 寄與하리라고 期待되는 것이다<sup>(122)</sup>.

以上の 經濟成果와 市場成果의 區別은 Bain 에 依한 것이다. 그러나 Caves 는 市場成果란 “어떤 産業의 市場行動에서 생기는 經濟的 結果가 經濟的 諸目標 즉 經濟成果를 達成

(121) Bain, *op. cit.*, p. 498.

(122) Bain, *op. cit.*, pp. 498~500. Caves, *op. cit.*, pp. 97~115. Kaysen and Turner, *op. cit.*, pp. 11~14.

可能케 하는 最善의 貢獻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의 評價”(123)라고 하고, 또한 같은 것이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經濟的 諸目標을 達成함에 있어서 產業이 가지는 潜在力과 比較된 實際의 貢獻의 크기”(124)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 定義는 經濟政策 一般의 目標에 대하여 產業組織論의 政策目標가 가지는 特殊的인 性質이 明示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點에서 難點을 가지는 것이다. 勿論 市場成果와 經濟成果는 그 內容에 있어서 重複되는 點도 있지만, 產業組織論의 體系로서는 市場成果를 經濟成果로부터 一旦 區別해서 論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Bain의 全體的 成果(overall performance), Caves의 經濟成果(economic performance) 및 Kaysen과 Turner의 經濟結果(economic results)등은 모두 以上과 같은 經濟政策의 一般的 目標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들은 產業組織論 乃至 反트러스트政策을 論함에 있어서, 이러한 概念을 導入하여 市場成果와 政策目標 一般과의 齎合性을 論理的으로 問題로 삼고 있다. 卽 그들은 市場構造, 市場行動의 規制를 통하여 바람직한 市場成果를 追求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所期의 經濟成果를 達成코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產業組織論은 그 論理的 展開에 있어서 市場構造의 概念이 가장 基礎的인 것이고, 이것이 市場行動에 커다란 制約을 준다고 본다. 이를테면 寡占市場에서는 獨占이나 純粹競爭的인 產業에서는 볼 수 없는 企業의 行動領域이 存在하고, 또한 製品差別化가 構造의 特性의 하나로 되는 產業에서는, 非差別化製品의 企業의 경우보다도 훨씬 廣汎한 製品政策이 實施可能하다. 또 한편으로 市場行動의 型은 市場成果를 追求하는 直接의 手段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略奪的 排除價行은 集中과 進入障壁을 높임으로써 資源配分을 惡化시키고, 寡占型의 價格設定이나 調整은 硬直價格을 維持하여 市場價格의 메카니즘을 阻害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 그것들은 다른 競爭的 要因과 더불어 競爭을 有效하게 作用시키기도 한다(125). 그러므로 市場行動의 型은 어떤 成果를 一義的으로 示唆하는 것이 아니고, 公共政策의 設定에 있어서 重要하다고도 볼 수 없다. 이 點에 관하여 Caves는 “내가 이따금 붉은 信號를 無視하고 自動車를 몰고 있다고 한다면(行動), 그것을 是正하는 矯正行動上 重要的 問題는, 내가 色盲 또는 放心狀態에 있는가(構造) 또는 좋아서 法律을 無視하고 있는가이다”(126)라는 比喩를 들고있다. 이것은 產業組織政策을 위하여는

(123) R. Caves, *op. cit.*, p. 95.

(124) R. Caves, *op. cit.*, p. 110.

(125)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s National Committee to Study the Antitrust Laws*, 1955, pp. 327~330, 333~336.

(126) R. Caves, *op. cit.*, p. 54.

市場行動에 그치지 않고 市場構造까지 考察해야 할 것을 強調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構造, 行動 및 成果의 세가지 基本概念을 中心으로 하여 그 相互間的 關聯을 考察하면서 產業組織論의 大要를 略述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產業組織論은 理論的 面에서는 Chamberlin에서 시작되는 獨占的競爭의 理論과 實際面에서는 美國의 反트러스트政策의 經驗에 依據하면서, 有效競爭論의 內容을 한층 發展시키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產業을 分析하기 위한 有用한 手段을 提供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產業組織論은 實際的 產業의 分析을 통하여, 競爭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獨占禁止政策의 實施에 크게 貢獻할 것이 期待된다. 오늘날과 같은 寡占體制下에서는 純粹한 完全競爭理論 또는 獨占理論은 勿論이고, 傳統的인 寡占理論에 의하더라도 그 實態를 把握, 分析하고, 이것에 對處하기는 不可能하다. 產業組織論은 이러한 寡占市場에 있어서의 競爭의 多樣化와 複雜化에 關聯하여, 이것을 體系의으로 分析하기 위한 새로운 分析方法과 理論的 武器를 豊富하게 提供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結 論

本稿는 競爭의 市場經濟에 있어서 資源의 效率의 配分이나 技術進步등의 經濟成果를 達成하기 위하여 獨寡占企業의 競爭制限의 要因을 規制하려는 獨占禁止政策의 實施와 더불어 展開되어온 有效競爭論을 綜合的으로 解明할 것을 企圖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筆者는 먼저 從來의 完全競爭論이 그 理論的 嚴密성과 妥當性에도 불구하고, 非現實의 前提와 靜態의 性格때문에 公共政策의 基準으로서는 不適當하고, 그 代身에 實現可能하고 動態의 性格을 가지는 有效競爭論이 出現하는 根據를 明白히 하였다. 다음에는 有效競爭論이 狀態나 結果의 어느것을 重視하느냐 하는 事實認識上的 相異와, 反트러스트政策 實施上的 嚴格한 立場과 彈力的 立場을 反映하여 構造基準論과 成果基準論으로 二大別되는 것을 보이고, 그 主張의 相異를, 各各의 立場을 支持하는 代表的 論者들을 中心으로 하여 考察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近來의 有效競爭論의 發展은 한편으로 現實政策의 面에서는 兩基準을 補完的으로 考慮하려고 하는 Mason의 立場과, 構造基準을 基本으로 하면서 成果도 아울러 考慮하려고 하는 司法長官委員會의 立場으로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 理論的 및 實證的 面에서는 構造, 行動 및 成果의 三概念을 導入하여, 獨占禁止政策 乃至 產業政策을 위한 科學的 體系化를 企圖하는 產業組織論의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經濟는 現在 高度의 經濟成長에 의하여 工業化로의 길을 걷고 있고, 또한

앞으로의 發展의 潛在力도 크다고 展望되지만, 여기서 附言코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서 民間企業에 “競爭의 冷風”을 불어넣는 일은 보다 큰 經濟成長을 위하여서나 또는 自由社會의 理念을 實現시키기 위하여서나 必要하다는 것이다. 本稿도 결국 이러한 問題意識에 立脚하여 쓰여진 것이다.

經濟理論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競爭의 市場經濟를 土臺로 하는 만큼, 產業의 集中과 獨寡占狀態가 進展됨에 따라서, 高價格과 低生産量에 의한 資源의 惡調整, 管理價格의 下方硬直性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昂進 및 技術革新과 經營革新등의 阻害로 經濟成長의 原動力이 弱化되는 可能性이 나올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公正한 競爭의 規則을 嚴格히 實施하여 秩序있는 競爭狀態를 維持하는 것이, 企業自身の 繁榮을 위해서나 또는 產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해서나 不可缺의 條件임은, Schumpeter<sup>(127)</sup>나 Galbraith<sup>(128)</sup>와 같은 非正統的인 學者들의 異論을 除外하고는 거의 모든 近代經濟學者가 認定하고 있는 바다. 우리나라도 獨寡占企業의 競爭制限을 排除하고, 公正한 競爭을 통하여 그들을 切磋琢磨시킬 手段을 講究하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그리고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가장 有用하고 適切한 方法은 獨占禁止政策을 實施하는 것이고<sup>(129)</sup>, 이것을 위한 經濟學的 理論基盤을 提供하는 것이 有效競爭論, 나아가서는 그 發展으로서의 產業組織論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筆者는 여기서 獨占禁止政策에 관하여 昭詳하게 論할 餘裕는 없으나<sup>(140)</sup>, 그것이 競爭의 市場經濟의 現代의 形態에 대한 不可缺의 政策分野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다만 獨占到 대한 感情的 反撥의 表現이 아니라, 企業과 產業의 活力을 維持하여 우리가 意圖하는 經濟成果를 達成하기 위한 하나의 基本的인 解決策이고, 微妙한 規制의 手段임을 強調해 두고자 한다. 從來의 價格理論이 가지는 完全競爭의 非現實性 때문에 競爭의 메리트에 대한 認識이 充分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實

(127)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1950.

(128) J.K. Galbraith, *The New Industrial State*, 1967. Galbraith가 이 著書에서 主張한 反트러스트法 無用論은, 1967年 6月 29日에 美國上院 小企業特別委員會(Select Committee on Small Business)의 小賣·流通·市場慣行小委員會(Subcommittee on Retailing, Distribution, and Marketing Practices)와 獨占小委員會(Subcommittee on Monopoly)가 開催한 세미나討論에서 Walter Adams, W.F. Mueller 및 D.F. Turner에 의하여 痛烈한 批判을 받았다. *Planning, Regulation, and Competition*, Hearing before Subcommittees of the Select Committee on Small Business, United States Senat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129) 獨占對策으로서의 獨占禁止政策以外에, 獨占에서 생기는 弊害를 對症療法的으로 防止하려는 弊害規制政策, 主要產業의 市場成果에 直接的 統制를 加하는 直接統制政策, Galbraith의 發想에서 나온 拮抗力(countervailing power) 政策 및 國有化政策등을 생각할 수 있다.

(130) 獨占止政策을 昭詳하게 論한 代表的인 著述로는, Kaysen, C. and Turner, D.F., *Antitrust Policy, An Economic and Legal Analysis*, 1959 와, Neale, A.D., *The Antitrust Laws of the U.S.A.*, 1960가 있다.

情에 있어서 競爭原理의 現實的 重要性을 認識하는데 本稿가 若干의 意義를 가지기를 期待한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教授〕

## 參 考 文 獻

### I. 論 文

- Adams, W., "Public Policy in a Free Enterprise Economy", Adams, W., ed, *The Structure of American Industry*, 3rd ed., 1961.
- Adelman, M. A., "Effective Competition and the Antitrust Laws," *Harvard Law Review*, Sept. 1948.
- Bain, J. S., "Workable Competition in Oligopoly: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Some Empirical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No. 2, May 1950.
- ,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after Thirty Years, The Impact on Industrial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No. 2, May 1964.
- Blark, J. M., "Toward a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40.
- , "The Orientation of Antitrust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No. 2, May 1950.
- , "Competition: Static Models and Dynamic Asp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5, reprinted in Heflebower, R. B. and Stocking, G. W. ed., *Reading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Series, 1958.
- Florence, P. S., "The Problem of Management and the Size of Firms: a Reply," *Economic Journal*, Dec. 1934.
- Kahn, A. E., "Standards for Antitrust Policy," *Harvard Law Review*, Vol. LXXII, 1963, reprinted in Heflebower, R. B., and Stocking, G. W. ed., *Reading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Series, 1958.
- Markham, J. W.,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0, reprinted in Heflebower, R. B. and Stocking, G. W. ed., *Reading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American Economic

- Association Series, 1958.
- , “Workable Competition and Operable Antitrust,” Markham. J. W. ed., *The American Economy*, 1963.
- ,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after Thirty Years—Discu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No. 3, May 1964.
- Mason, E. S., “The Current Status of Monopoly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Harvard Law Review*, June 1949, reprinted in Mason, E. S.,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e Monopoly Problem*, 1957.
- , “Workable Competition and Workable Monopoly,” *Business Practices Under Federal Antitrust Laws*, 1951, reprinted in Mason, E. S.,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e Monopoly Problem*, 1957.
- , “Market Power and Business Conduct: Some Comments on the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s Committee on Antitrust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No. 2, May 1956, reprinted in Mason, E. S., *Economic Concentration and Monopoly Problem*, 1957.
- McDonald, J., “The Sherman Act and Workable Competition,” *Fortune*, Jan. 1950, reprinted in Samuelson, P. A., Bishop, R. L., and Coleman, J. R. ed, *Readings in Economics*, 2nd ed., 1955.
- Modigliani, Franco, “New Development on the Oligopoly Fro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une 1958.
- Robinson, E. A. G., “The Problem of Management and the Size of Firms,” *Economic Journal*, June 1934.
- Sosnick. S. H., “A Critique of Concepts of Workable Competi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 1958.
- Stigler, G. J., “Temporary National Economic Committee: Reviews of Monographs,”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41.
- , “The Extent and Bases of Monopoly,” *American Economic Review*, No. 2, Part 2, June 1942.



——,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s Committee on Antitrust Policy—Discuss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No. 2, May 1956.

## II. 判決記錄

U.S. v. U.S. Steel Corp. 251 U.S. 417(1920), reprinted in Stelzer, I. M., *Selected Antitrust Cases*, 3rd ed., 1966.

U.S. v. Aluminum Co. of America, 148 F. 2d 316(1945), reprinted in Stelzer, I. M.,  
*Selected Antitrust Cases*, 3rd ed., 1966.

U.S. v. National Lead Co, *et al.*, 63 F. Supp. 153(1945); 332 U.S. 319(1947), reprinted  
in Stelzer, I. M., *Selected Antitrust Cases*, 3rd ed., 1966.

## III. 單行本

安部一成, 小林好宏, 「現代寡占經濟論」, 1960.

Adams, W., ed., *The Structure of American Industry*. 3rd ed., 1961.

——, and Gray, H. M., *Monopoly in America: The Government as Promoter*, 1955.

Bain, J. S., *Barriers to New Competition: Their Character and Consequence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1956.

——, *Industrial Organization*, 2nd ed., 1967.

Burns, A. R., *The Decline of Competition*, 1936.

*Business Concentration and Price Policy*, a Report of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55.

Caves R., *American Industry: Structure, Conduct, Performance*, 2nd ed., 1967.

Chamberlin, E. H.,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1933.

——, ed., *Monopoly and Competition and Their Regulation*, Papers and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by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1954.

Clark, J. M., *Competition as a Dynamic Process*, 1961.

Dirlam, J. B. and Kahn, A. E., *Fair Competition: The Law and Economics of Antitrust Policy*, 1954.

越後和典, 「反獨占政策論」, 1965.

- Edwards, C. D., *Maintaining Competition*, 1949.
- Fainsod, M., Gordon L., and Paramountain, J. C., Jr., *Government and the American Economy*, 3rd ed., 1959.
- Galbraith, J. K., *American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 1952.
- , *The Affluent Society*, 1958.
- , *The New Industrial State*, 1967.
- Heflebower, R. B. and Stocking, G.W., ed., *Readings in Industried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Series, 1958.
- 鎌倉昇, 「價格, 競争, 獨占」, 1958.
- Kamerschen, D. R. ed., *Readings in Microeconomics*, 1967.
- Kaplan, A. D. H., Dirlan, J. B., and Lanzillotti R. F., *Pricing in Big Business: A Case Approach*, 1958.
- 「寡占特集」, 東洋經濟臨時增刊, 1965年12月5日號.
- Kaysen, C. and Turner, D. F., *Antitrust Policy, An Economic and Legal Analysis*, 1965.
- 「企業合併特集」, 東洋經濟臨時增刊, 1968年7月3日號.
- 小西唯雄, 「反獨占政策と有效競争」, 1967.
- 熊谷尙夫, 「經濟政策原理」, 1964.
- Levin, H. J. ed., *Business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A Book of Readings*, 1958.
- Markham, J. W., *Competition in the Rayon Industry*, 1952.
- ed., *The American Economy*, 1963.
- Mason, E. S.,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e Monoply Problem*, 1957.
- Miller, J. P. ed., *Competition, Cartels and Their Regulation*, 1962.
- Neale, A.D., *The Antitrust Laws of the U.S.A.*, 1960.
- Planning, Regulation, and Competition*, Hearing before Subcommittees of the Select Committee on Small Business, United States Senate,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s National Committee to Study the Antitrust Laws*,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5.

- Robinson. E. A. G., *Monopoly*, 1941.
- Robinson, J.,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1933.
- Samuelson, P.A., *Economics: an Introductory Analysis*, 7th ed., 1967.
- , Bishop, R. L., and Coleman, J. R., ed., *Readings in Economics*, 2nd ed., 1955.
- 「産業政策と 八幡・富士合併特集」, 東洋経済臨時増刊, 1968年12月11日號.
- 「市場構造と 經濟効率」, 關西經濟研究センター資料, 1967年12月.
- Schumpeter, J.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1950.
- Stelzer, I. M., *Selected Antitrust Cases*, 3rd ed., 1966.
- Stocking, G.W., *Workable Competition and Antitrust Policy*, 1961.
- , and Watkins, M.W., *Monopoly and Free Enterprise*, 1951.
- Stonier, A.W. and Hague, D.C., *A Textbook of Economic Theory*, 2nd ed., 1967.
- Sylos-Labini, Paolo, *Oligopoly and Technical Progress*, 1962, translated by Henderson, E.  
from *Oligopolio e progresso tecnico*, 1957.
- 館龍一郎, 小宮太郎, 「經濟政策の 理論」, 1964.
- Watson, D.S., *Economic Policy*, 1960.
- Wilcox, C., *Competition and Monopoly in American Industry*, TNEC Monograph, No.  
21, 1940.
- , *Public Policies toward Business*, revised ed., 1960.